

연구보고 R547 | 2007. 11.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최 경 환 연구 위원
황 의 식 연구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최 경 환 연구 위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5장 집필
황 의 식 연구 위원 제2장, 제4장, 제5장 집필

머 리 말

고령농업인들은 평생을 국민경제 발전과 자녀 교육에 헌신해 왔다. 이제 나이가 들어 영농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지하기가 여의치 않다.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농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청장년 농업인들도 장차 고령농업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미리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노후 소득대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책 실태를 분석하여 이들의 노후 소득대책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에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어 내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생한다. 청장년 농업인들은 당장은 영농에 전념하는 것이 최선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수가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차분히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책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좀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7.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산업화·도시화로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누구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 노인들은 주 소득원이 공적 이전소득이다. 그러나 아직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사적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다.

61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소득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이 주종을 이루며,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34.8%나 된다. 대부분의 고령농업인들은 노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어렵게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의 약화와 고령농업인의 어려운 노후생활을 고려할 때 청장년 농업인들도 노후 준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장년 농업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53.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낮은 수준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가입률과 개인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청장년 농업인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로는 건강(50.0%), 생활비 마련(26.2%), 의료비(14.4%)를 들었다. 노후 준비는 본인이 주가 되고 가족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006년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실태와 여력을 파악하였다. 40, 50대 농업인들은 다수가 표준소득등급이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젊은 농가일수록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장년 농업인은 농업투자의 수익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노후 준비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투자 효율성이 불규칙하거나 미래의 불확

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다 안전한 노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책의 기본방향은 우선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보장성과 수익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농업인 각자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기본적인 방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권장한다. 셋째, 적정 수준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 대책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넷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다섯째, 2007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택역모기지론을 농촌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적용한다. 여섯째, 경제적 여력이 있는 농업인이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한다. 일곱째, 적절한 소일거리를 마련하여 은퇴 후에도 건강한 고령농업인들이 사회 참여도 하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소득 대책에 한정하여 종합적인 노후 대책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일부 확인된 것처럼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소득 못지 않게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Farmers Income Security for Retirement

As the economy has been industrializing and urbanizing, the traditional function of family system in elderly care has been weakening. Everyone has to reserve sufficient income resources for his or her old age by oneself.

There are well-designed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main income source of retired people is public transfer income. But in Korea, where the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s not firmly established, the elders mainly depend on their labor income and/or private transfer income.

According to an analysis with the raw data of the 2006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the main source of household income of over 61-year-old farmers is farm income. About thirty five percent (34.8%) of them had farm household income not sufficient to cover the household expenditure. The elderly farmers couldn't prepare for their old age enough and are very poor.

Considering the weakening function of the family system and the poor lives of elderly farmers, young farmers have to prepare their old ages thorough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 interview survey of under 60 years old farmers, only 53.2% of them are subscribed to the national pension, which means the others of them cannot be protected through the basic income safety net. Moreover, the subscribers are expected to receive only small pension benefits because they are applied to very low income level. Furthermore the pension subscription rate of their wives is very low. It was also found that young farmers are most concerned with health(50.0%), followed by income earnings(26.6%) and medical costs(14.4%) after retirement. They thought that it is desirable for them to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life on their own and receive family or government supports

additionally.

According to the analysis with the raw data of the 2006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the subscription rate of national pension in the case of young farmers under 50 years old is very low. Also the younger they are, the poorer their preparations for old age.

Young farmers may have several alternatives to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depending on the returns from farm investment. But under the uncertainty of future investment circumstances, they need to choose more safe ways for old ages.

Here we conclude that it is desirable that young farmers utilize the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foremost and several alternatives additionally for their old ages.

We suggest several ideas to fulfill the aims as the following: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reinforc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fo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at is, the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recommend farmers' wives to subscribe to the national pension. Third, the government should facilitate the subscription of young farmers at proper income levels so that they can receive sufficient pension benefits.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subsidy for farmers' pension premium. Fifth, it is necessary that the reverse mortgage implemented since July 2007 is modified and applied in rural areas. Sixth,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several incentives for wealthy farmers to utilize other methods, including private pensions. Seventh,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so that elderly farmers with good health can take appropriate jobs to spend their leisure times and earn some income.

Researchers: Kyeong-Hwan Choi and Eui-Sik Hwang

Research period: 2007. 1 ~ 2007. 11

E-mail Address: kyeong@krei.re.kr, eshwa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9
4. 연구방법	10

제2장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1. 이론적 검토	13
2. 생애주기별 소득원 구성의 변화	24
3.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실태 분석	29
4.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44

제3장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53
2. 국민연금 관련	55
3. 개인연금 관련	62
4. 노후 준비에 대한 태도	64

제4장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분석

1. 공적연금 가입 실태	71
2. 국민연금 납입 가능성 분석	74
3.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경로별 분석	79

4. 실물옵션(real option) 모델에 의한 비교정태분석 86

제5장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을 위한 정책과제

1.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의 기본방향 91
2. 정책과제 95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05
2. 결론 109

부록 1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 113
부록 2 외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119
부록 3 농가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실물옵션모형 123
부록 4 농업인 노후 준비실태 조사표 127
참고 문헌 141

표 차례

제2장

표 2-1. 고령화 리스크의 유형과 특징	16
표 2-2. 개인의 고령화 리스크 유형별 대응수단	18
표 2-3. 연령대별 최소 및 적정생활비 기대치	20
표 2-4. 2007년도 최저생계비	23
표 2-5. 노인의 소득원 유형	25
표 2-6. 노인(60세 이상)의 소득원 구성 변화 국제비교 (1980~1995)	26
표 2-7. 노인(60세 이상)의 연령계층별 소득원 구성 국제비교 (1995)	27
표 2-8.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원 의존도	28
표 2-9. 고령농가 연령별 농가소득 구성(2006)	30
표 2-10. 고령농가 소득규모별 농가분포 및 소득구성(2006)	31
표 2-11. 고령농가 연령별 농가소득 규모별 농가분포(2006)	32
표 2-12. 고령농가 연령별 가계비 지출 구성(2006)	33
표 2-13. 연령별, 소득규모별 가계비 미충족 농가 비율(2006)	35
표 2-14. 보건의료비 제외시 가계비 미충족 농가 비율(2006)	38
표 2-15. 연령별 농가소득이 월 169만 원보다 적은 농가비율 분포(2006)	40
표 2-16. 연령별 순토지자산 보유규모(2006)	42
표 2-17. 순토지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농가소득 변화(2006)	43
표 2-18. 가구원수의 변화	45
표 2-19. 가구원수별 농가 분포	45
표 2-20. 지역별 가구형태의 변화	46
표 2-21. 가구주 부모의 생계 부양자	47

표 2-22.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48
표 2-23.	연령별 생활비 대비 실제소득 비율	49
표 2-24.	도·농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존 소득원	50

제3장

표 3-1.	응답자 특성	54
표 3-2.	국민연금 가입 여부	56
표 3-3.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57
표 3-4.	국민연금 가입자(59세이하)의 가입년수 분포	58
표 3-5.	국민연금 가입자(59세 이하)의 최초가입연령 분포	58
표 3-6.	공적연금 가입자의 가입이력 및 예상수급연령	59
표 3-7.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수준	60
표 3-8.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수준과 연간소득 및 자산과의 관계 분석	61
표 3-9.	예상 노후 최소생활비 수준	67

제4장

표 4-1.	청장년(40, 50대) 농가의 공적연금 납입규모별 농가비율(2006)	72
표 4-2.	청장년 농가의 경지규모별 공적연금 납부규모별 분포(2006)	73
표 4-3.	청장년 농가의 가계비 항목별 지출 구성(2006)	73
표 4-4.	청장년 농가의 농가소득 및 자산규모(2006)	74
표 4-5.	청장년 농가의 소득규모별 농가분포(2006)	75
표 4-6.	청장년 농가의 연령별, 소득규모별 가계비 미충족 농가 비율	77
표 4-7.	청장년 농가의 연령별, 경지규모별 가계비 미충족 농가 비율	77
표 4-8.	연령별, 경지규모별 평균소득 이하 농가 비율(2006)	78

표 4-9. 국민연금 가입 기간별 순현재가치(NPV)	80
표 4-10. 청장년 농가의 노후 소득준비 대안별 시뮬레이션	83

제5장

표 5-1.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최저생계비 충족 표준소득등급	98
표 5-2. 주택연금 월지급액(2007년)	100

부록

부표 2-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115
부표 2-2. 기초노령연금 수급 내용	115
부표 2-3. 주택연금 월지급액(2007년 현재)	118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생애주기설에 따른 개인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15
그림 2-2.	경영주 연령별 소득/가계비 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	35
그림 2-3.	고령농가 소득규모별 가계비 총당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2006)	35
그림 2-4.	고령농가 소득/가계비(보건의료비 제외) 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2006)	37
그림 2-5.	고령농가의 소득(61~65세 가계비의 65%) 농가 누적 분포	39
그림 2-6.	역모기지론의 개념도	41

제4장

그림 4-1.	청장년 농가 연령별 소득/가계비 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	76
그림 4-2.	청장년 농가 소득규모별 소득/가계비 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	76
그림 4-3.	청장년 농가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별 농가분포	78
그림 4-4.	농가의 노후 소득준비 경로 구분	82
그림 4-5.	정부의 국민연금 보조비율과 수령비율의 변화 영향	89
그림 4-6.	국민연금 가입연령(T1)과 연금수령기간(T2)의 영향	89

제5장

그림 5-1.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체계	92
그림 5-2.	직종별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가입자 누적 비율	96

부록

부도 2-1.	공적연금의 추이	117
---------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이 농촌지역의 주 산업이던 시대에는 대가족제도가 일반적이어서 경제활동과 가족 구성원의 부양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 대가족 제도가 와해되고 자녀의 이농으로 부모부양 의식과 부모세대의 자녀의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¹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앞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물리적으로도 어렵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농업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자기부양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인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고령농업인이나 은퇴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것이었다. 고령농업인의 대다수는 자녀의 교육과 뒷바라지에 전력을 다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고 자녀들의 노인(부모)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고령농업인이 농촌빈곤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농업인 또는 은퇴농업인의 노후 대책에 대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준비시기를

¹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 서론

농친 고령(또는 은퇴) 농업인들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동원되는 수단들이 임기응변식이거나 단기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령농업인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집중된데 비해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현재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장래 노인인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후 대책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가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청장년 농업인들이 사전에 노후 대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고², 1994년부터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농업인도 스스로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³. 그러나 대다수 농업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노후 준비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농업인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장년 농업인이 계획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청장년 농업인들이 별다른 노후 대책 없이 노후를 맞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장수(長壽)가 불행(不幸)’이 되고, 현재의 고령농업인들의 빈곤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문제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 문제가 제기될 때는 이미 대응방안을 강구할 시기를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

² 농어촌지역에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³ 2005년 12월부터는 기업(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직장근로자에 대해서는 3층 구조(1층: 공적연금, 2층: 기업(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의 노후대비 수단이 갖추어졌다.

⁴ 최희경(2004)은 40~50대 임금근로자의 미래 노후빈곤율을 추정한 연구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한 지위가 연금혜택의 차별구조를 가져오고 은퇴후 노년기에 더욱 증폭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기 시작하면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대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농업인의 노후 대책 준비는 공적연금 이외에도 농업인이 계속 영농하여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농업생산요소인 농지를 자산으로서 역할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소홀했던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금후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 관련 정책의 수립과 노후대책 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목적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아울러 노후 준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둘째, 현재 고령농업인의 소득 및 지출 실태를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셋째,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넷째, 고령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소득안전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섯째, 우리보다 일찍부터 노후 소득준비에 관심을 가져온 일본과 독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섯째, 노후 준비의 이론적 검토,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실태 및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준비실태와 인식에 대한 분석, 외국 사례의 시사점 등을 통해 장차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농업인의 노후 대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몇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책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농업구조개선을 연계하여 접근하였다. 김운근 등(1985)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업구조조정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서 농가의 고령화 실태를 살펴보고, 고령농업인의 노후 대책 및 농업구조개선 수단으로 농어민 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구상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정명채 등(1987)의 「농어민연금 및 사회보험제도연구」와 정명채 등(1988)의 「농어민 연금제도 연구」가 있다. 다만, 정명채 등(1992)의 「은퇴농어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농어민 연금을 직역⁵개념으로 접근하던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역개념으로 접근하여 국민연금을 농어촌에 확대 실시하되 농업경영이양장려금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농업인들의 노후 준비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보고서로는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김인숙(1991)의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는 농가 중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첫째, 노후의 생활비 요구 수준은 현재의 생활비 대비 81.79%로 나타났으며, 둘째, 노후 대비 실태는 하위 수준으로 편중되고, 대비중인 노후 소득원은 저축과 저금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의 노인복지대책은 농어민 연금제도와 농업소득 보장임을 제시하였다.

⁵ 직역(職域)은 직종에 따라 연금 적용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직역연금이 있다.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연금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기존의 직역연금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들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으로서의 농어민연금은 우리나라에는 없다.

한국개발조사연구소(2003)의 「농가 경제·사회·복지실태조사 보고서: 소농가를 중심으로」는 농가의 경제·사회·복지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에 국민연금의 수급과 노후 대책에 대한 항목을 몇 가지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다.

농림부(2004)의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로서 농림어업인의 전반적인 복지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중에 국민연금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김시원 등(2006)은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준비 및 노후 소득보장 실태에 대한 제1차 국민 노후 소득보장 패널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 노후소득보장 관련 패널조사체계를 갖추어 이 분야의 연구와 정책 추진에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 실시 이후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성숙 등(2001)의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책의 실태를 조사 하였고 농어촌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넷째, 일반적인 노후 소득보장 문제와 사회안전망 전반에 관련된 연구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부터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박찬용 등(2000)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는 우리나라 소득보장체제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①사회보험 확대 과정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②저성장-고실업으로 납부 불능, ③사회보험료 기여 회피, ④관리운영체계의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각종 수당 등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체제의 개편방안으로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급여 수준의 적정화, 소득보장 선정 기준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사각지대 해소

6 서론

방안으로는 ①최저 가입기간 단축을 통한 방안과 ②기여 회피 축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석재은 등(2000)의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노인의 평균소비수준⁶은 50대 근로계층의 60%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노인 소득보장의 기본 방향으로 ①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역할 분담, ②공적 소득보장 간의 역할 분담, ③대상 특성별 소득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노인 소득보장 방안을 단기(2001~2010년, 공적 연금 미성숙기), 중기(2011~2020년, 공적 연금 성숙기), 장기(2021년 이후, 공적 연금 완숙기) 및 노인 소득보장제도별(①공적 연금, ②경로연금, ③공공부조)로 제시하였다.

석재은(2005)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쟁점과 발전 방향”은 국가, 시장(기업), 개인이 노후 소득보장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노후 소득보장에서 빈곤을 방지하는 기초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공적 연금과 공공부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행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0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1층(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층(법정퇴직금제도, 기업연금), 3층(개인연금)으로 구분하였다.

김원섭 등(2006)의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은 국민연금 단일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에서 다양한 소득원천을 포함하는 노후 소득보장의 다층체계 구축으

⁶ 노인가계의 필요소득(생계비)은 측정방식에 따라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산정방식으로는 물량방식, 소비함수법, 전환점분석방식이 있다. 후자는 가계조사나 소득조사를 통해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을 표준생계비로 삼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생계비를 최저생계비로 삼는 방식이다. OECD 등 외국의 주요 기관들이 이 방식을 통해 빈곤선을 정한 것을 보면 33~80%로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다(김미곤 1997).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연구들의 결과도 50~75% 범위내에서 분포하고 있다(석재은·김태완 2000). 즉 연구자에 따라 노인가계의 필요소득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에서의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이론적, 정책적 논의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다층 노후 소득보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가능한 정책의 도입방안과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이 분야의 연구들은 노후 소득보장의 다층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명 등(2007)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은 급속한 고령화속에서 정치적·재정적 측면에서 제도별로 지속 가능하고, 제도 적용집단별로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국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신중욱·이정호(2004)의 “노후재정의 핵심과 노후 보장체계의 확립”은 노후는 경제적 위험⁷에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노후재정의 핵심은 노후 위험관리와 투자 효율성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은퇴 이후의 위험관리상 최선의 방안은 연금제도이며, 다층구조(연금제도)는 투자의 분산화(다양화)라는 의미 외에 노후재정의 위험관리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농업 및 농촌 부문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실태 전반과 사회안전망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정자 등(2002)의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실태 및 복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여성의 관점에서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농촌노인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①소득보장정책, ②의료정책, ③복지서비스, ④주택정책, ⑤사회적 서비스 정책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박대식(2004)의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은 ①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②현행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영농 활동,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소비·저축

⁷ 노후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소득대체율저하 위험, 장수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정치적 위험 및 투자 위험이 있다.

및 부채 실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은구 등(2005)의 「거주지역·경제능력 등에 따른 농촌노인의 유형화 및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는 농촌노인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실증적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사회 구조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모형을 개발하였다.

박대식 등(2006)의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은 농촌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의 기본방향과 유형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노후 소득보장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검토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모기지 관련 연구는 크게 외국의 역저당제도에 대한 연구와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최은희(2006)가 잘 정리하고 있다. 김정호 등(2007)은 고령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을 제시하였다.

위에서의 선행 연구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에 확대실시되기 전에 추진된 연구들은 농업인들의 노후 대책으로 특수직역연금으로서의 농어민 연금을 주장하였으나 국민연금에 포함되었다.

둘째, 국민연금 실시 후에 추진된 농업인 노후 실태 관련 조사나 연구는 많지 않다. 그나마 일부 실태 조사에 머물거나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는 미흡하다.

셋째, 대다수 연구들은 이미 고령에 접어든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후 소득안전망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도 제도 전반의 보완·개선에 관한 것이다.

넷째, 노후 소득보장 관련 최근의 연구들은 노후 소득안전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1층 구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층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노후 소득대책의 일환으로 역모기지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농가의 주택과 농지 등 자산 활용방안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이 연구는 청장년 농업인들이 현재 노후 소득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장차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과 관련한 정책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청장년 농업인, 주로 40~50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즉,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책 실태 파악과 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고령농업인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노후 준비는 소득(생활비), 주거마련, 건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범위를 소득 측면에 한정하였다.

또한, 소득보장은 크게 공적 보장과 사적 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적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노후 대비는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가 보유한 자산 등 사적 보장부문도 불가피하게 다루었다.

연구 범위를 소득에 한정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건강과 정서적인 부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3.2. 보고서의 구성

제2장에서는 먼저 생애주기설에 따른 노후 준비의 이론적 검토와 생애 주기별 소득 및 지출 구성의 변화를 정리한다. 이어서 노인 소득원 구성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정도를 선진국들과 비교해 본다. 다음에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및 지출 실태 파악을 통해 현재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수준을 분석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준비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의 실태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2006년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40, 50대 농업인들의 소득 및 지출 실태와 공적연금 가입 실태, 그리고 이들의 노후 준비 여력 등을 실물옵션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이론적 검토와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책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검토한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외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사례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4.1. 관련 문헌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검토하였다. 우선 본 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문헌과 논문들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에 농업인 노후 대책과 관련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문헌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4.2. 관련 통계자료 분석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실태와 청장년 농업인의 소득 및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기초로 고령농업인 농가 유형별 소득 및 지출 실태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통계패키지 SAS(ver 8.0)를 이용하였다.

40, 50대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 경로별 분석을 위해서는 실물옵션모델(Real Op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농업인 노후대책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와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김수완 등 2005), 제1차(2005)국민 노후보장패널조사(김시원 등 2006),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통계청 2007) 등을 참고하였다.

4.3.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실태 조사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65세 미만 농업인(경영주) 500명을 면접설문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2005년도 농업센서스의 농업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방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조사는 연구진이 작성한 설문조사표를 이용하여 전문조사기관(현대리서치연구소)의 조사원들이 현지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자료는 통계패키지 SAS(ver 8.0)와 SPSS PC+(ver 7.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4. 연구자문회 개최

연구 수행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계획과 실태조사표의 내용 검토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모형분석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4.5. 외국의 사례 연구

외국의 제도적 사례를 참고하기 위하여 일본과 독일의 농업인 노후 소득보장제도 관련 문헌과 자료를 검토하였다.

1. 이론적 검토

1.1. 개념 정의

‘노후’는 경제적, 신체적, 역연령(曆年齡)적인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하다.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농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은퇴, 정년(停年)과 정년(定年) 등이 있다. 이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은퇴(隱退)는 직임(職任)에서 물러나거나 세속의 일에서 손을 떼고 한거(閑居)하는 것을 뜻한다. 정년(停年)은 공무원이나 기타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연령(停限年齡), 즉 어떤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정년(定年)은 연금이 지급되는 연령, 즉, 근로로부터의 은퇴에 따른 소득의 결여를 각종 연금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후는 신체적으로는 인체의 노화로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당면하는 인생의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역연령적으로는 일정한 연령(예: 60세 또는 65세) 이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정한 연령은 논자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노후’는 일정한 고연령에 도달한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노후는 각종 소득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14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이와 같이 ‘노후’는 경제적, 신체적, 역연령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연령적 측면에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때부터를 ‘노후’로 간주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도 현재는 61세부터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61세 이후를 노후로 보기로 한다.

‘노후 대책’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측면 등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소득)만을 검토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노후 소득 대책’이라고 하였다.

1.2. 생애주기와 소득원 구성의 변화

가. 생애주기와 소득 및 지출의 관계

개인마다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다르지만, 누구나 ‘출생 - 성장 - 결혼 - 육아(교육-출가) - 노후’ 라는 생애주기(life cycle)를 거쳐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일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일생 동안의 소득 획득과 소비 수준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 어려서는 소득보다는 소비가 많다. 성장하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장년 시기는 일생동안 가장 활발한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어린 시절의 소비와 은퇴 후의 소비까지 충족할 소득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이후에는 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지만, 소득 감소가 더 커서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는 시기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일생의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른바 생애주기 설이다.

그림 2-1. 생애주기설에 따른 개인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이러한 생애주기설에 따른 개인의 소득과 소비는 평균수명의 연장, 즉 고령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2-1>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및 지출의 변화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왼쪽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그만큼 노후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청장년기에 소득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되어야만 한다<그림 2-1의 오른쪽 그림>.

여기서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노후의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노후가 되기 이전에 미리 필요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후 소득대책의 핵심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고정 수입원을 사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국민연금 등에 의한 노후 소득준비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이다.

나. 고령화 리스크와 대응수단

1) 고령화 리스크의 유형 및 특징

고령화로 인해 당면할 수 있는 위험의 유형으로는 일반적으로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자산리스크, 재무리스크 및 재정리스크 등으로 구분할

16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표 2-1. 고령화 리스크의 유형과 특징

부문	리스크 유형	특징
개인	생존리스크	사망률(mortality)의 안정적 예측은 가능하나, 물가 및 금리 등 거시적 변수와 근로기간에 종속적
	건강리스크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비용 증가와 의료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모럴헤저드에 취약 → 수술 및 치료 등 생존위험률(morbidity)의 장기예측 어려움
	자산리스크	물가, 금리 및 부동산가격 등 거시지표의 장기변동, 개인의 투자성향 및 금융지식 등에 영향
기업	채무리스크	정부정책에 종속적, 사회보험의 부담률
정부	재정리스크	정책적 선택에 영향(세대 간 부담 전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미흡 등) → 정치적 리스크에 취약 고령화 리스크의 최후 대부자 역할(last resort)

수 있으며, 유형별 특징은 <표2-1>과 같다.⁸

생존리스크는 개인이 예상했던 기대수명보다 오래 생존하게 되어 노후를 위한 수입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를 말한다. 건강관리 수준 제고,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수명은 급격히 연장되고 있는데, 사회제도적으로는 근로기간이 오히려 짧아지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수가 ‘재앙’이 될 수 있는 생존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

건강리스크는 고연령이 됨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타인 의존상태에 있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건강리스크는 궁극적으로는 질병의 치료 및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로 나타나게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암 발병 확률, 수술률 등이 높아지고 평균 입원일수도 증가하게 된다. 물론 과거에 비해 동일한 연령의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명연장에 따른 은퇴 이후 소요되는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건강리스크는 증가되고 있다.

⁸ 오영수 등(2006)

자산리스크는 개인이 축적한 자산이 경기침체, 금리변동, 물가, 투자실패 등의 요인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향후 개인들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저축, 투자 등을 늘려감에 따라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각종 거시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손실을 입음으로써 노후소득이 안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재무리스크는 기업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위해 안게 되는 재무상의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말한다. 또한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고령화로 재정에 의한 사회보장지출이 확대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이익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재정리스크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특수직역연금 등의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재정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말한다. 정부는 조세 및 재정 수단을 동원하여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재정의 크기는 조세 등 세입의 크기에 의해 한계가 지워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정부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제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재정리스크가 확대된다.

이와 같이 개인이 직면하는 고령화 리스크는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자산리스크 등으로 다양하다.

2) 고령화 리스크의 대응수단

개인이 고령화 리스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표2-2>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부, 사회, 시장 등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수단은 달라진다. 생존리스크 대응수단은 생계급여,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역모기지론 등이 있다. 건강리스크 대응수단으로는 의료보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등이 있다. 자산리스크 대응수단은 PB, WA, FP 등이 있다.

18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표 2-2. 개인의 고령화 리스크 유형별 대응수단

리스크 유형	대 응 수 단		
	정부재정	사회보험	민간금융·보험
생존리스크	생계급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일시납 즉시연금, 역모기지
건강리스크	의료보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건강보험, MSA ¹⁾ 민간장기간병보험
자산리스크	-	-	PB ²⁾ , WA ³⁾ , FP ⁴⁾

주: 1) MSA(Medical Saving Account)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

2) PB = Private Banking

3) WA = Wrap Account

4) FP = Financial Planning

자료: 오영수 등(2006)

1.3. 노후 준비의 적정수준 기준

가. 적정 필요소득 수준

노인이 적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출에 필요한 소득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적정 필요소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을 산출하기가 어렵고 설사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적정’이라는 객관화하기 어려운 개념이 들어 있고, ‘필요’라는 개념 또한 확실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⁹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에서는 일정 연령(60세 혹은 65세) 이상을 ‘노령계층’으로 동일한 범주로 다루고 있지만, 연령, 소득, 건강상태, 가구형태, 성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모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어 필요소득수준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적정 필요소득수준이라는 개념은 이론적 논의에서는

⁹ 석재은·김태완(2000)

가능해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다.

‘적정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개념 설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다.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기준이 상이한데, 선행 연구들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①노후(은퇴) 직전의 지출수준, ②전국가구의 평균지출 수준, ③도시가구 지출의 일정 수준, ④농촌가구(농가) 지출의 일정 수준 그리고 ⑤최저생활비 수준 등으로 다양하다.

나. 필요소득 수준에 관한 연구 결과

실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의 필요소득 수준을 설정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었다.¹⁰ OECD국가들에서 노인들의 평균가처분소득은 사회전체의 평균가처분소득의 84.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의 소득대체율이 퇴직전 소득 대비 70~9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Munnell의 연구에서는 소득세 감소 및 퇴직에 따른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퇴직 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대체율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 가처분소득의 72%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국내에서도 노인의 적정 필요소득 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김용하(1997)의 적정 연금급여 수준, 윤석명(1998)의 최저소득대체율과 적정소득대체율, 권문일(2000)의 적정소득대체율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석재은 등(2000)은 현재 노인의 평균소비수준은 50대 근로계층의 60% 수준이라고 산정하였다.¹¹ 소득효과¹²를 통제된 상태에서 1분위를 제외하면 70~80% 수준이고, 소득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1분위를 제외하면 50~70% 수준이라고 보았다.

¹⁰ 석재은·김태완(2000)

¹¹ 한 실태조사에서는 중년기 농업인의 노후의 생활비 요구 수준은 현재의 생활비 대비 81.49%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김인숙 1991).

¹² 노인의 소비지출이 근로계층과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 소득효과, 가구규모효과, 연령효과를 들고 있다(석재은 등, 2000).

20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표 2-3. 연령대별 최소 및 적정생활비 기대치

단위: 천 원

연령대	개인 기준		부부 기준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
50대	838	1,207	1,275	1,847
60대	720	1,057	1,107	1,603
70대 이상	625	908	939	1,360

자료: 김시원 등(2006)

한편, 최근 김시원 등(2006)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령대별로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기대치를 산정하였다<표2-3>. 50대 부부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생활비는 1,275천 원, 적정생활비는 1,847천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우 부부기준 최소생활비는 939천 원, 적정생활비는 1,360천 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최저생계비 개념의 적용

노인의 필요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다른 하나가 최저생계비 개념이다. 이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설정한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산출방식에 따라 절대적 최저생계비, 상대적 최저생계비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산정방법과 특성과 장단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¹³

¹³ 김미곤 등(2006)에서 정리.

1) 절대적 최저생계비

(가) 전물량 방식

절대적 최저생계비는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1899년 Rowntree가 영국 York시의 빈곤을 추정하는 데 처음으로 사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필수품 선정, 사용량 결정, 내구년수 결정 및 가격 결정 등에 자의성이 내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 반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은 미국의 Orshansky(1963)가 전물량 방식을 간소화한 방식으로 영양학자에 의하여 계측된 최저식료품비를 먼저 산출하고 여기에 Engel계수의 역수(미국의 경우 3)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것이다. 엔겔계수는 소득 중 식품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므로 엔겔계수가 일정하면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상대적 최저생계비

Townsend는 1974년 절대적 수준에 입각한 빈곤의 개념을 비판하고 빈곤은 오직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절대적 최저생계비의 문제는 첫째, 최저 생존수준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둘째, 최저 생존수준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상대적 방식이다. 상대적 방식은 그 사회의 평균소득 혹은 지출수준과 개인의 소득 혹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최저생계비는 평균 혹은 중위가구 소득 또는 지출

의 일정 비율로 산출된다. 이런 상대적 비율방식은 빈곤과 불평등과 관련된 국제비교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널리 활용된다. 상대적 비율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로는 일본(일반근로자세대 소비지출의 68%), 영국(중위소득의 60%), 호주(1973년 기준년도 이래 1인당 가처분소득 변화 반영) 등이다.

박탈지표 방식은 가구의 생활양식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빈곤선을 도출하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단점은 첫째, 박탈지표 항목 구성에 전문가의 자의성 문제 둘째, 요구변화의 반영 문제 셋째, 소득수준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보조지표로만 사용되고 있다.

3) 주관적 생계비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은 자신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관적 생계비의 첫 번째 개념은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이다. 1974년 L.Rainwater가 1946년부터 1969년까지 껄껄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얻음으로써 일반화된 계측방식이다. ‘당신이 사는 곳에서 4인의 가족이 근근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라는 설문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이다. 이 방식은 라이덴(Leyden)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된 기법(라이덴방식)이다. 자기 자신이 근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에 대해 내린 평가를 종합해서 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주관적 생계비의 문제점은 첫째, 최저생계비¹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설문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둘째, 최저한의 생계비란 설문의 의미를

¹⁴ 노인부부가계의 노후 월평균 생산비를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裕樂)생계비로 나누어 산정하려는 시도도 있다(이선형 등 2002).

응답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추정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조).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기준선¹⁵이 되며 최저소득기준¹⁶이라 할 수 있다. 2007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734천 원이다<표 2-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된다. 보다 많은 가구원이 있으면 생계비도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표 2-4. 2007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35,921 (372,978)	734,412 (628,370)	972,866 (832,394)	1,205,535 (1,031,467)	1,405,412 (1,202,484)	1,609,630 (1,377,214)

주: ()는 현금급여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¹⁵ 정부가 자산조사를 실시할 때 기초로 제공되는 공공부조 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되는 선
¹⁶ 국민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견해를 반영한 것

2. 생애주기별 소득원 구성의 변화

노후는 경제활동에서 은퇴함으로써 소득창출능력이 급격히 감퇴하게 되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면 소득 확보가 단절되는데 비해 소비 수준은 갑자기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소득대체율 위험이라 한다. 이러한 위험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또한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소득활동 없이 소비만 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장수 위험).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변동할지 알 수 없으며,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인플레이션 위험). 정치적 상황과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노후 소득원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정치적 위험). 투자시장도 어떻게 변동할지 불확실하다(투자 위험). 이와 같이 노후에는 여러가지 경제적 위험이 우려되는데, 가능한 한 확실성이 높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소득대책에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¹⁷

일반적으로 소득원은 근로(사업)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표 2-5>, 그 구성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연령대별로 소득원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장년 시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주를 이루는 반면 가족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의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면 은퇴 전에 준비했던 다양한 소득원으로부터의 수입이 노후생활비의 원천이 된다. 즉, 노후에는 자산소득, 공·사적 이전소득이 주요 소득원이 된다.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노후 소득원 구성은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어떻게 구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달라진다. 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오래전부터 잘 갖추

¹⁷ 신중욱 등(2004)

표 2-5. 노인의 소득원 유형

소득원 유형	소득원	구성 내용
근로소득	근로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자산소득	시장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이자소득, 저축, 개인연금, 퇴직금 등
사적 이전소득	가족	자녀, 친척 등 비공식 지지망으로부터의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국가	공적연금, 경로연금, 생활보호수당 등

자료: Rainwater, Rein & Schwartz(1986), Rein & Turner(1999).

출처: 석재은·김태완(2000)에서 재인용

어진 국가에서는 공적 이전소득이 노후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부양에 의한 사적 이전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원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별로 사회전체 노령인구(60세 이상)의 소득원 구성을 비교하여 보면, 국가별로 노인들의 소득원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표 2-6>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 미국, 독일의 노인들의 소득원 구성의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비교자료의 시점이 1995년으로 다소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이 자료가 주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실시되었고, 1995년에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실시됨으로써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진 미국, 독일 및 일본은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55% 이상으로 높다. 이에 비해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와 대만은 사적 이전소득이 5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공적 이전소득 다음으로 자산소득의 비중이 큰데 비해, 우리나라와 대만은 여전히 취업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이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대만은 1980년에 비해 1995년에는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

26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표 2-6. 노인(60세 이상)의 소득원 구성 변화 국제비교(1980~1995)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95
근로소득		16.2	26.6	31.3	21.6	29.9	26.9	15.2	15.5	4.6
자산소득	소계	5.5	9.9	11.2	6.6	6.7	8.8	26.2	23.3	13.7
	재산소득	3.3	4.5	5.3	2.5	3.8	4.8	14.5	8.5	2.0
	예금인출	2.2	4.9	2.1	2.4	1.7	1.9	1.7	1.5	1.6
	사적연금	0.0	0.5	3.8	1.7	0.2	2.1	10.0	13.3	10.1
사적이전	소계	75.6	56.6	18.7	6.6	61.6	56.5	3.8	1.6	1.9
	자녀지원	72.4	56.3	15.6	4.2	58.2	52.9	0.3	0.0	0.2
	기타	3.2	0.3	3.1	2.4	3.4	3.6	3.5	1.6	1.7
공적이전	소계	2.0	6.6	36.1	57.4	2.3	7.6	54.6	55.8	77.6
	공적연금	0.8	2.9	34.9	57.1	2.2	7.3	53.9	55.5	77.0
	생활보호	1.2	3.7	1.2	0.3	0.1	0.3	0.7	0.3	6.0

원자료: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 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재구성.

출 처: 석재은 등(200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대만은 노후 소득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노후 대책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소득 구성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국가 간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2-7>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대만은 60~64세 연령대의 초로(初老) 노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이 연령대에서는 공적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적 이전소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미국, 독일의 경우에는 공적 이전소득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 노인(60세 이상)의 연령계층별 소득원 구성 국제비교(1995)

단위: %

국가	소득원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한국	근로소득	57.4	30.7	19.8	13.4	5.0	
	자산소득	소계	10.5	8.6	11.5	7.7	10.8
		재산소득	2.6	5.3	6.9	3.7	1.7
		예금인출	6.8	2.5	4.6	3.7	9.1
		사적연금	1.1	0.8	0.0	0.5	0.0
	사적이전	26.8	51.6	63.4	68.4	77.7	
	공적이전	소계	5.3	7.8	4.6	9.6	5.8
		공적연금	3.2	3.7	1.9	3.2	2.5
		생활보호	2.1	4.1	2.7	6.4	3.3
	일본	근로소득	37.8	20.4	15.3	8.3	5.3
자산소득		소계	5.6	5.8	5.9	7.0	11.2
		재산소득	2.4	2.4	1.5	3.2	3.9
		예금인출	1.9	1.7	3.4	1.9	3.9
		사적연금	1.3	1.7	1.0	1.9	3.3
사적이전		2.1	3.4	3.9	8.3	7.2	
공적이전		소계	41.3	61.6	67.0	69.2	65.8
		공적연금	41.0	61.6	67.0	68.6	63.2
		생활보호	0.3	0.0	0.0	0.6	2.6
대만		근로소득	44.0	26.6	15.8	9.1	5.1
	자산소득	소계	8.9	11.4	6.9	6.3	8.1
		재산소득	4.3	5.7	3.7	4.5	6.1
		예금인출	2.4	1.5	2.1	1.8	1.0
		사적연금	2.2	4.2	1.1	0.0	1.0
	사적이전	35.1	47.9	68.9	72.7	79.8	
	공적이전	소계	6.8	11.4	4.7	10.0	3.0
		공적연금	6.8	10.6	4.7	10.0	2.0
		생활보호	0.0	0.8	0.0	0.0	1.0
	미국	근로소득	36.8	14.3	11.4	2.9	3.4
자산소득		소계	20.1	24.5	25.0	27.1	20.1
		재산소득	6.1	8.6	6.8	14.3	9.4
		예금인출	0.4	1.6	1.3	0.7	4.0
		사적연금	13.6	14.3	16.9	12.1	6.7
사적이전		0.0	0.0	0.0	0.0	0.0	
공적이전		소계	39.5	54.9	57.8	66.4	69.2
		공적연금	38.6	54.9	57.8	66.4	68.5
		생활보호	0.9	0.0	0.0	0.0	0.7
독일		근로소득	12.9	1.7	0.5	1.6	3.3
	자산소득	소계	13.0	14.4	13.6	12.0	15.2
		재산소득	2.4	1.3	0.5	2.4	3.8
		예금인출	2.4	0.4	1.5	0.8	2.7
		사적연금	8.2	12.7	11.6	8.8	8.7
	사적이전	8.2	12.7	11.6	8.8	8.7	
	공적이전	소계	68.3	80.1	82.4	81.6	79.3
		공적연금	66.7	79.7	81.9	81.6	79.3
		생활보호	1.6	0.4	0.5	0.0	0.0

원자료: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 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재구성.

출 처: 석재은 등(2000)에서 재인용

표 2-8.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원 의존도

단위 : %

가구주 연령	소득원 종류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타 소득	
50세 미만	85.5	0.9	3.3	3.9	2.9	3.5	100.0
50대	83.6	1.7	5.1	2.5	2.6	4.4	100.0
60대	56.5	8.8	7.1	10.4	8.3	9.0	100.0
70세 이상	28.7	2.9	9.4	25.5	32.0	1.4	100.0
전체가구	77.9	2.5	4.8	5.4	4.9	4.6	100.0

자료: 김시원 등(2006)

이와 같이 고령이 될수록 소득보장체계의 유무에 따른 소득원 구성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노후 소득의 불안정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연령별 소득원 구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표2-8>, 모든 연령대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고, 고연령이 될수록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70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이 28.7%를 차지하고 있고, 공적 이전소득이 25.5%, 사적 이전소득이 32.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은 공적 이전소득보다는 사적 이전소득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노인의 소득원 구성은 사회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인에 국한된 실태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서 고령농업인만을 추출하여 소득 실태를 분석하였다. 고령농업인의 경우 어떤 소득원의 구성을 보이고 있고, 적정 필요소득수준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 다음 절에서 분석하였다.

3.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실태 분석

3.1. 고령농업인의 소득 및 소비지출 실태

고령농업인은 어느 정도 노후 소득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6년 농가경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적정 수준, 그 필요성의 정도를 도출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표본농가 중 연금수령 연령에 해당하는 “61세 이상 농가만을 추출하여 분석하면서, 젊은 영농인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하여 3인 가구 이하”인 고령농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젊은 영농인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근로소득인 농업소득이 크게 나타나 고령농가의 소득 구성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농가경제는 가구단위로 조사함으로써 후계인력의 유무에 따라 농가 간 소득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농가경제조사 전체 표본농가 3,074호 중에서 52.9%인 1,625호가 여기에 해당되어, 이들 농가를 분석표본으로 선정하여 소득 및 소비지출 실태를 분석하였다.

고령농업인의 농가소득분포를 보면<표 2-9>, 평균 농가소득은 24,655천 원으로 농가전체의 평균소득인 32,303천 원의 76.4% 수준으로 평균보다는 낮다. 소득원별 구성비를 보면 농업소득이 39.1%를 차지하고 있고, 농지임대수입이 1.2%, 이전소득이 2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소득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이전소득이 7.7% 수준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2-8)의 70대 공적 이전소득 비율 25.5%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61~65세 농가의 평균농가소득은 34,893천 원으로 가장 높고, 76세 이상 고령농가의 농가소득은 15,850천 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아지고 있다. 61~65세 농가의 평균소득이 전체농가의

표 2-9. 고령농가 연령별 농가소득 구성(2006)

단위: %

	농가 소득 (천원)	농업 소득 비율	농지 임대수입 비율	이전소득 비율			
				합계	농업 보조금	국민 연금등	사적 이전소득
61~65세	34,893	42.4	0.9	15.4	3.8	4.5	7.2
66~70세	27,436	42.0	0.8	19.3	4.3	7.7	7.4
71~75세	20,366	36.2	1.6	26.0	3.8	8.7	13.5
76세 이상	15,850	29.0	2.5	38.4	3.0	13.6	21.8
전체 평균	24,655	39.1	1.2	22.1	3.7	7.7	10.6

자료: 2006년 농가경제 조사원자료 분석 결과

평균소득보다 높은 것을 보아 농가에서는 65세 이전을 노후연령이라기 보다는 활발하게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경영주 연령대별 농가의 소득원 구성을 보면, 61~65세의 농가에서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42% 수준으로 매우 높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비중은 4.5%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76세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 비중은 29.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13.6%로 높은 수준이나 전국민의 평균치보다는 여전히 낮다. 고령농가일수록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 노후 연금 준비가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농가의 소득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농가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농가의 비율이 14.6%이고, 1천~1.5천만 원 정도의 농가 비율도 18.2%나 되어 32.8%가 저소득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표 2-10>. 반면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수준이 높은 고령농가의 비중은 25.5%에 불과하다.

소득규모별 소득원 구성을 보면, 농가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농가에서는 이전소득 비중이 48.0% 수준이어서 이전소득이 중요하고, 농업소득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1천만 원 이하인 농가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20.3%나 차지하고 있어 공적연금이 소득문제를

표 2-10. 고령농가 소득규모별 농가분포 및 소득구성(2006)

단위: %

농가소득 규모	농가 비율	농가 소득 (천원)	농업 소득 비율	이전소득 비율			
				합계	농업 보조금	국민연금등	사적 이전소득
1천만 원 이하	14.6	6,571	2.6	48.0	6.2	20.3	21.5
1~1.5천만 원	18.2	12,417	31.5	32.3	4.0	12.6	15.7
1.5~2천만 원	18.0	17,447	37.0	28.7	3.9	10.6	14.2
2~3천만 원	23.8	24,419	38.8	25.1	4.5	10.4	10.3
3천만 원 이상	25.5	49,032	39.1	22.6	4.4	7.7	10.4
평균	100 (1,625명)	24,655	39.1	22.1	3.7	7.7	10.6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3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 고령농가의 경우에는 농업소득 비중이 39.1%이고, 이전소득의 비중은 22.6%에 불과하다.

연령별, 농가소득 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표 2-11>, 61~65세 농가에서는 3천만 원 이상인 농가가 4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 농가의 비율은 7.5%에 불과하다. 이 연령대 농가에서는 소득수준이 충분한 농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영주 연령이 71~75세인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농가의 비중이 15.3%를 차지하고 있고, 1천~1.5천만 원 사이의 농가소득을 얻고 있는 농가의 비율도 22.5%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76세 이상의 고령농가에서는 55% 이상이 농가소득이 1.5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농가에서는 70세가 넘어가면 고령농업인으로 소득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농가소득을 얻고 있는 고령농가의 비율도 10.2%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 고령농가일수록 공적보조에 의한 이전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수령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전혀 수령하지 않은 농가가 7.6%를 차지하

표 2-11. 고령농가 연령별 농가소득 규모별 농가분포(2006)

단위: 호, %

농가소득 규모	61~65세	66~70세	71~75세	76세 이상	전체
5백만 원 이하	2.1	2.9	2.2	3.2	2.6
5백~1천만 원	5.4	6.3	13.1	24.0	12.0
1~1.5천만 원	7.1	12.1	22.5	28.2	18.2
1.5~2천만 원	10.8	14.9	21.0	22.7	18.0
2~3천만 원	24.9	28.6	23.9	15.3	23.8
3천만 원 이상	49.8	35.2	17.4	6.5	25.5
전체	241 (100)	489 (100)	587 (100)	308 (100)	1,625 (100)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고, 연간 100만 원 이하를 수령한 농가가 29.2%나 되고 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백만 원 사이인 농가는 가장 많은 비율인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75% 이상의 농가가 2백만 원 이하의 공적 이전소득을 얻고 있어 농업부문에서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령농가의 가계비 지출 규모를 보면, 전체평균 지출규모는 연간 22,570천 원이다. 소비지출의 구성을 보면<표 2-12>, 식료품비가 18.0%를 차지하고, 보건의료비는 7.2%, 교양오락비가 2.1%, 교통통신비가 6.0%를 차지한다. 도시가구와 비교하여 보면,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경영주 연령별로 가계비를 비교하여 보면, 61~65세 농가의 경우에는 가계비 지출이 연간 31,133천 원 정도로 도시가구 평균 30,200천 원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반면 71~75세 고령농가는 소득은 낮지만 가계비도 연간 19,604천 원 수준으로 적게 지출하고, 76세 이상의 농가는 연간 17,952천 원을 가계비로 지출하고 있다. 고령농가일수록 가계비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령농가의 적정필요소득은 낮아지고, 적은 소득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표 2-12. 고령농가 연령별 가계비 지출 구성(2006)

단위: 천 원, %

	가계비	식료품비	광열 수도비	보건 의료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비소비 지출
61~65세	31,133	15.2	3.4	4.6	2.3	6.7	31.3	36.4
66~70세	22,708	19.3	4.2	7.2	2.3	6.9	30.9	29.2
71~75세	19,604	19.1	4.2	8.7	2.0	5.0	28.9	32.2
76세 이상	17,952	18.4	4.2	9.4	1.5	4.2	23.2	39.2
전체 평균	22,570	18.0	4.0	7.2	2.1	6.0	29.3	33.4
도시가구	30,200	21.6	4.2	4.4	4.0	14.9	14.7	15.8

주: 1. 기타소비지출은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감가상각비, 기타 소비지출을 합계한 것이다.

2. 비소비지출은 조세 및 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교육비 송금, 기타 비소비지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경영주 연령별 소비지출의 구성을 보면, 61~65세 농가에서는 비소비 지출이 매우 높고, 교통통신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보건의료비 비중이 4.6%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고령농가일수록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의료보장체계가 중요한 노후 대책이 된다. 71세~75세 농가를 보면 의료비 비중이 8.7%이고, 76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9.4%나 이르고 있다. 반면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 등 후생수준을 높이는 소비지출의 비중은 낮아 여가생활의 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소비지출의 구성을 보아도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느냐에 따라 적정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3.2.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부족 실태 분석

고령농가가 소득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적정 노후 소득수준을 평가할 기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개인별로 추구하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수준 이하가 되면 소득부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는 개인별로 상대적 기준이 되는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개별가구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좋은 지표이지만, 소득이 높으면 동시에 소비도 증가하므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소득부족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소득이 낮으면 소비지출도 낮아지기 때문에 객관화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절대적인 소득수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절대적인 소득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및 절대빈곤 소득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새롭게 지적되고 있는 지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은퇴 이전 소득의 일정 수준(예: 65~75%)을 적정 노후 소득수준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근 도시가구 조사¹⁸에서는 퇴직전 생활비의 65%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의 가계비 충족 비율과 61~65세 사이 농가의 평균 가계비 지출의 65% 수준을 노후 소득 문제가 발생하는 임계치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¹⁹ 농가의 경우에는 61~65세를 은퇴직전 연령으로 보고 분석한 것이다. 이 수준보다 낮은 소득수준을 얻은 농가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부족 문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¹⁸ 하나은행, 한국갤럽, 2007. 7.

¹⁹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은 10.2%이고, 절대빈곤 이상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은 7.2%인 것으로 분석되어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나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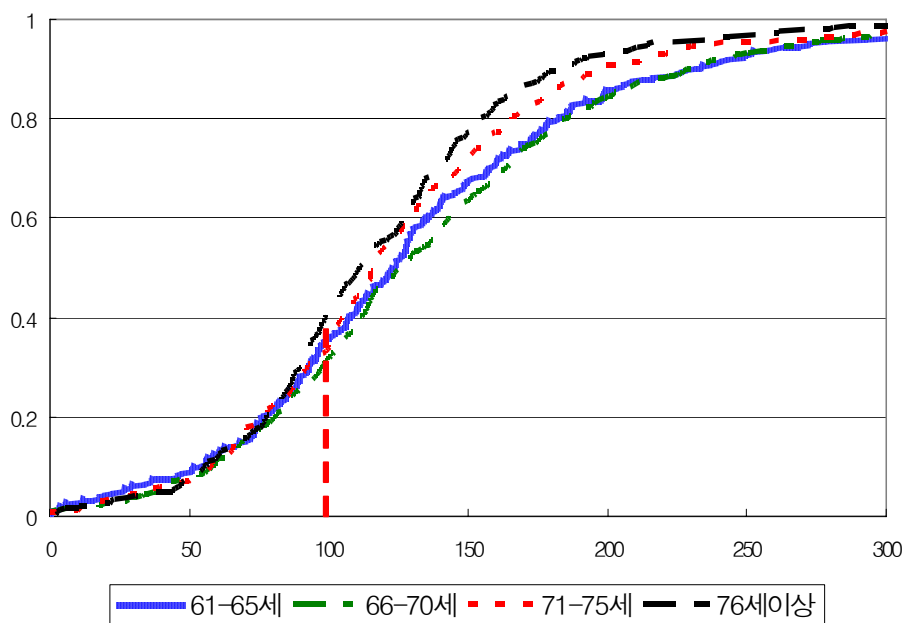
표 2-13. 연령별, 소득규모별 가계비 미충족 농가 비율

단위: %

소득규모	61~65세	66~70세	71~75세	76세 이상	전체
5백만 원 이하	100.0	100.0	90.9	70.0	90.5
5백~1천만 원	80.0	86.7	60.7	74.3	73.3
1~1.5천만 원	60.7	50.8	45.2	39.1	46.1
1.5~2천만 원	52.4	32.5	28.0	25.7	32.2
2~3천만 원	26.9	24.5	20.9	23.4	23.8
3천만 원 이상	22.7	11.0	12.5	5.0	15.2
전체	35.7	31.7	33.8	40.9	34.8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그림 2-2. 경영주 연령별 소득/가계비 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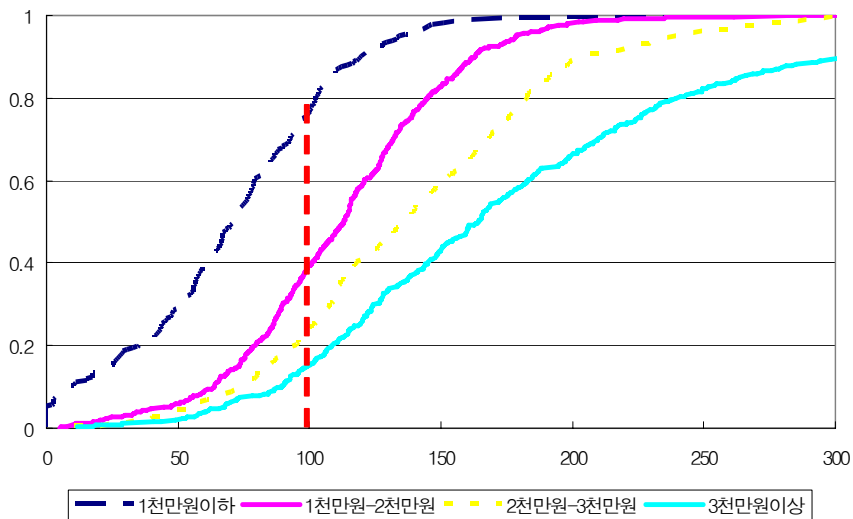


36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먼저 가계비 지출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을 고려하여 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고령농가에서 34.8%의 농가가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비율을 경영주 연령대별로 보면<표 2-13>, 61~65세 농가에서는 35.7%이고, 76세 이상 농가에서는 40.9%를 차지하고 있다. 61~65세 농가 중 소득 수준이 2천만 원 이하인 농가에서는 50% 이상의 농가가 가계비지출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고, 76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농가에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 대비 가계비 비율에 따른 농가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2-2>이다. 여기서 100은 소득과 가계비가 같은 점이다. 이 점보다 좌측은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누적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이 분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령농가의 소득규모별 농가소득의 가계비 충당비율별 농가분포를 보면<그림 2-3>, 1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은 농가들은 대부분 가계비를 충

그림 2-3. 고령농가 소득규모별 가계비 충당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2006)



당하지 못하고 있다. 1~1.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은 농가에서도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46.1%나 이르고 있다. 농가소득이 1.5천만 원 이하인 고령농가의 비율이 32.8%인 점을 고려하면 많은 농가들이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표 2-10>.

고령농가는 많은 보건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만큼 가계비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아닌 복지정책의 확대로 농가의 의료비 부담을 축소시켜주면 고령농가의 가계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필요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른 정책의 변화에 따라 노후 소득의 필요수준은 달라진다. 이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가계비만을 고려하였을 때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한 농가는 34.8%이었는데, 보건의료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27.9%로 6.9%가 감소한다<그림 2-4>. 그만큼 의료보장정책도 노후 소득 부족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4. 고령농가 소득/가계비(보건의료비 제외) 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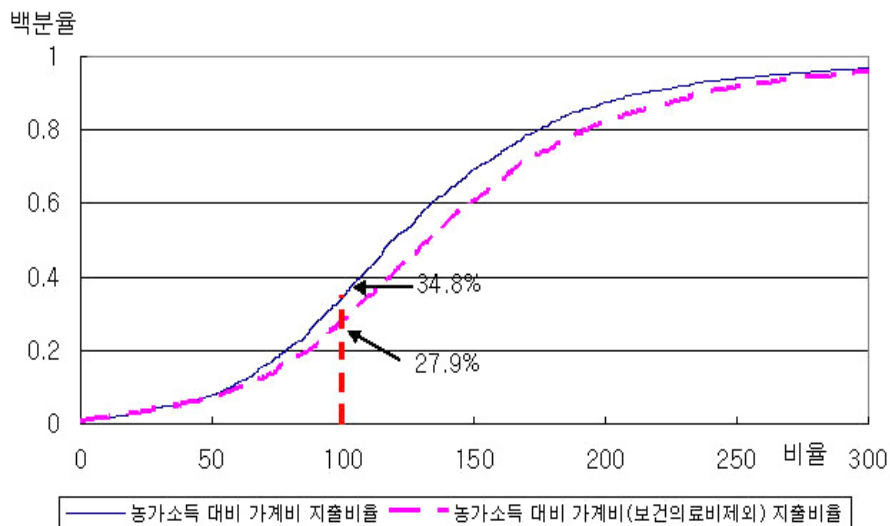


표 2-14. 보건의료비 제외시 가계비 미충족 농가 비율(2006)

단위: %

소득 규모	61~65세	66~70세	71~75세	76세 이상	평균
5백만 원 이하	100.0 (100.0)	100.0 (100.0)	90.9 (90.9)	60.0 (70.0)	88.1 (90.5)
5백~1천만 원	80.0 (80.0)	73.3 (86.7)	50.8 (60.7)	58.1 (74.3)	61.0 (73.3)
1~1.5천만 원	60.7 (60.7)	36.9 (50.8)	33.9 (45.2)	20.7 (39.1)	33.2 (46.1)
1.5~2천만 원	47.6 (52.4)	25.0 (32.5)	20.0 (28.0)	14.3 (25.7)	24.0 (32.2)
2~3천만 원	23.1 (26.9)	21.1 (24.5)	14.8 (20.9)	14.9 (23.4)	18.9 (23.8)
3천만 원 이상	21.3 (22.7)	8.1 (11.0)	12.5 (12.5)	5.0 (5.0)	13.5 (15.2)
합 계	33.5 (35.7)	25.7 (31.7)	26.6 (33.8)	27.6 (40.9)	27.9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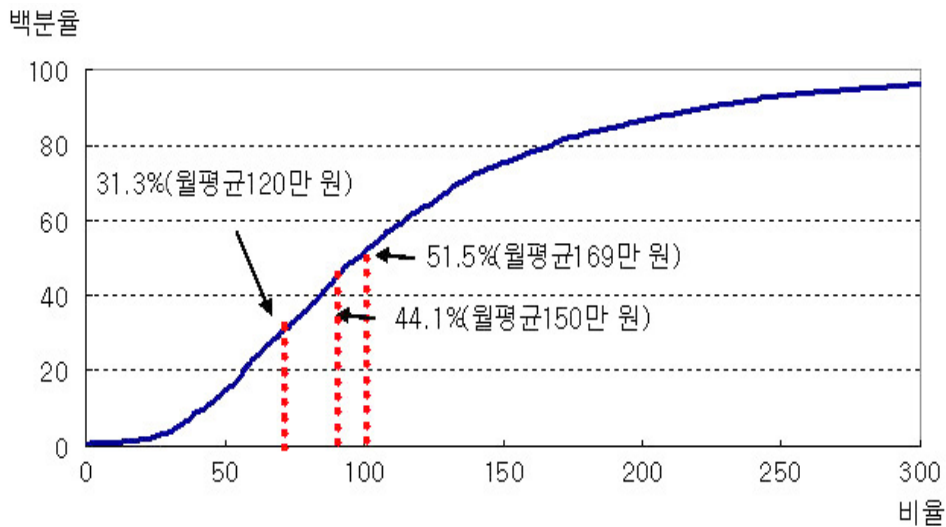
주: ()는 가계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표 2-13>의 수치이다.

보건의료비를 제외하였을 경우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비율을 경영주 연령별, 소득규모별로 보면<표 2-14>, 61~65세 농가에서는 그 비율이 35.7%에서 33.5%로 감소하고, 76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40.9%에서 27.6%로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71~75세 농가도 33.8%에서 26.6%로 감소한다. 고령농가일수록 의료보장체계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소득규모별로 보면 5백~1천만 원 사이의 농가에서는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한 농가의 비율이 73.3%에서 61.0%로 감소한 반면,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수준인 농가에서는 그 비율이 15.2%에서 13.5%로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이를 볼 때 복지정책에 의해 보건의료비를 축소하여 주면 저소득 고령농가일수록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고령농가층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원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적정 노후 소득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농가소득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분포를 분석하였다. 절대적 소득기준으로 먼저 61~65세 농가 가계비 지출(31,133천 원)의 65% 수준인 20,236천 원(월 169만 원)을 설정하였다. 이 소득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보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정한 것이다.²⁰ 이는 은퇴 직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이 적정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은 전체 51.5%에 이르고 있다. 소득 수준 월 가계비 169만 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61~65세 농가에서는 29.2%이고, 71~75세 농가는 61.4%이다. 고령농가일수록 소득이 부족한 농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2-5. 고령농가의 소득/(61~65세 가계비의 65%) 농가 누적 분포(2006)



²⁰ 가계비 지출을 6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 월 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도 고려하여 <그림 2-5>에 함께 표시하였다. 농가의 소득수준은 일정하므로 적정소득이 감소하면 <그림 2-5>에서와 같이 기준이 100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0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표 2-15. 연령별 농가소득이 월 169만 원보다 적은 농가비율 분포(2006)
단위: %

61~65세	66~70세	71~75세	76세 이상	평균
29.2	39.9	61.4	79.2	51.5

노후 적정소득을 월 169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추었을 때 농가소득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농가소득/150만 원)의 비율은 51.5%에서 44.1%로 감소한다. <그림 2-5>에서 월 소득이 169만 원이면 100이지만, 소득 기준이 감소하면 그 비율도 감소하므로 하락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농가 적정소득을 다시 월 120만 원으로 낮추었을 때 그 비율은 31.3%로 더 감소하게 된다. 적정소득을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30% 이상의 고령 농가는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젊었을 때 미리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3.3. 역모기지론 도입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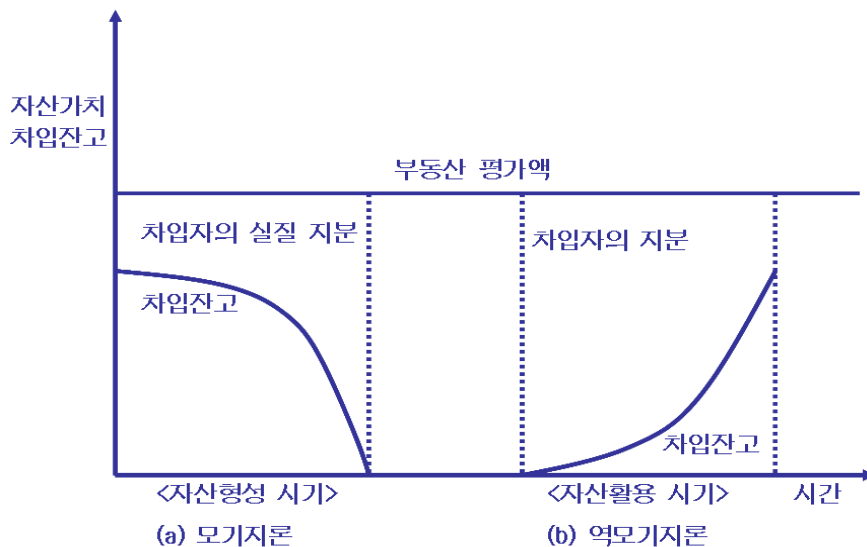
농가의 노후 대책문제를 농가소득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농가가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족한 소득문제를 자산을 처분하여 보완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을 얻는 것으로 노후 소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신의 노후 소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농가의 정서상 농지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여 농지를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은 농가가 많다. 그러나 점차 영농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상속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안도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된다.

농가의 자산에는 대동식물, 대농기구, 농업시설 등이 있지만 자산가치가 장기간 잘 보전되고 거래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자산이 토지자산이

다. 여기에서는 농가자산 중 토지자산만을 고려하여 이를 유동화하여 소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농가의 소득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고령농가의 소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력한 수단이라는 관점이다. 토지자산을 바로 매각하는 것은 농가의 소득원을 상실하는 것이 되고 자산관리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역모기지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모기지론의 개념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활용하면서 이의 일정부분을 대출금으로 차입하고 최종적으로 대출금과 차입잔고가 일치하였을 때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것이다<그림 2-6>.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문의 주택, 특히 거래가 용이한 아파트에 대해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실시하면서 가계의 고령농가 소득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아직까지는 농지에 대해 역모기지론이 정책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다.²¹

그림 2-6. 역모기지론의 개념도



²¹ 농지를 근거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의 도입방안은 이 연구를 벗어나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42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자산에서 현재 부채를 뺀 순토지자산의 규모를 먼저 산출하였다. 부채가 토지자산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통합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토지자산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처리하였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음(-)의 소득을 다른 농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증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접근하였다.

그 결과 고령농가 평균 농가소득은 24,655천 원이지만 동시에 순토지자산은 호당평균 1억 5,336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표 2-16>. 이를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61~65세 농가에서 순토지자산은 1억 7,289만 원이고, 76세 이상 농가의 순토지자산도 1억 3,615만 원에 이르고 있다. 순토지자산은 최고령농가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순토지자산을 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동화할 경우 고령농가의 소득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는가를 분석한 것이 <표 2-17>이다.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공사가 활용하고 있는 amortization 공식에 의해 농지를 매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²² 주택금융공사는 차입자의 연령에 따라 유동화하는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표 2-16. 연령별 순토지자산 보유규모(2006)

단위: 천 원, %

연령별	농가소득	가계비	가계비 충족 못하는 농가비율	순토지자산
61~65세	34,893	31,133	35.7	172,891
66~70세	27,436	22,708	31.7	146,757
71~75세	20,366	19,604	33.8	158,538
76세 이상	15,850	17,952	40.9	136,146
평균	24,655	22,570	34.8	153,361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²² 이 공식은 A라는 고정된 자산이 있으면 이를 T기간에 대해 균등한 가치로 분배 하였을 때 단위기간의 가치(π)를 산출하는 식이다.

표 2-17. 순토지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농가소득 변화(2006)

단위: 천 원, %

연령별	농가소득 (A)	역모기지론 소득 (B)	전체소득 (A + B)	가계비 충족 못하는 농가비율
61~65세	34,893	6,115	41,008	23.9 (35.7)
66~70세	27,436	4,930	32,366	21.7 (31.7)
71~75세	20,366	4,617	24,983	23.0 (33.8)
76세 이상	15,850	1,891	17,741	33.8 (40.9)
평균	24,655	4,498	29,153	24.8 (34.8)

주: ()는 역모기지론 도입 이전의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비율

데 65세인 경우에는 담보가치의 70%, 75세인 경우에는 담보가치의 50%를 소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순토지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나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지가치를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의 경우 시가로 환산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농지의 경우에는 과소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석결과 순토지자산은 80세까지 연간 4,498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전환되고 있다. 61~65세 농가는 순토지자산이 연간 6,115천 원으로 전환되고, 71~75세 농가는 연간 4,617천 원, 76세 이상의 농가는 1,891천 원의 소득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농가소득에다 역모기지론으로 획득한 자산소득까지 포함한 고령농가의 전체소득은 평균 29,153천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61~65세 농가의 소득은 41,008천 원으로 증가하고, 71~75세 농가의 소득은 24,983천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의 도입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노후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비율은 34.8%에서 24.8%로 약 10%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61~65세 농가

44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에서는 가계비를 충족 못한 농가의 비율이 35.7%에서 23.9%로 감소하고, 71~75세 농가에서는 그 비율이 33.8%에서 23.0%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을 도입하는 것은 농가의 노후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보조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조수단으로서 농지에 대한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여야 한다.

4.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4.1.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9.2%이었다. 비율만으로 보면 고령화사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 농촌의 고령화는 더 심각하다. 도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2%로 이제 겨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반면, 농촌은 18.6%로 고령사회의 막바지를 지나 머지않아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사회²³에 접어든 농촌지역(군)도 상당수에 이른다.

고령사회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만큼 젊은이 한 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2003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²³ 초초고령사회는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나, 초고령사회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강조하기 위하여 쓰이고 있다.

²⁴ IMF 한국사무소 대표인 메탈 카라솔루(Meral Karasulu)는 외환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한국의 '고령화'라고 충고하고 있다(조선일보 2007.10.12자).

8.6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던 비율이 2030년에는 2.8명당 1명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는 노후를 후세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경우 후세대의 부담 과중으로 사회적 부양의 크기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래의 노인은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1970년만 해도 농가의 가구원수는 6명에 가까웠다.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보다 많았다 <표 2-18>. 그러나 2005년의 농가 가구원수는 2.7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자녀들이 출타 또는 분가하여 대가족이 분산되어 핵가족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농가는 부부가 1명의 자녀와도 동거하지 않는 핵가족으로 바뀌

표 2-18. 가구원수의 변화

단위: 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가구	5.4	5.1	4.6	4.2	3.8	3.5	3.3	3.0
농가	5.81	5.57	5.02	4.42	3.77	3.23	2.91	2.70
어가	5.99	5.82	5.38	4.75	4.08	3.32	3.08	2.77

자료 : 농림부, 2006. 농림업 주요통계.

표 2-19. 가구원수별 농가 분포

단위: 호, %

가구원수	1990년		2000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체	1,767,033	100.0	1,383,468	100.0
1인	118,735	6.7	181,255	13.1
2인	400,962	22.7	535,318	38.7
3인	317,028	17.9	242,802	17.6
4인	333,416	18.9	199,195	14.4
5인	304,358	17.2	136,790	9.9
6인	169,446	9.6	58,312	4.2
7인 이상	123,068	7.0	29,806	2.2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고 있다. 가족구성원이라도 떨어져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동거하면서 상호부양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농가의 가구원수별 농가 분포를 살펴 보아도 지난 10년 동안 핵가족화가 크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19>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에는 가구원수가 2인 이하인 농가 비율은 29.4%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51.8%의 농가가 2인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핵가족화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5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농가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핵가족화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보편화되었다. 도시지역은 1990년에 1인 가구가 2.5%, 부부가구가 4.3%를 차지하던 것이 2000년에는 각각 4.6%와 6.8%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은 1990년에 1인가구 3.0%, 부부가구 8.0%였던 것이 2000년에는 각각 6.8%와 16.4%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2-20>.

가구원수와 가구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부양기능 관련 의식도 많이 변화하였다. 최근 들어 자녀, 특히 장남에 의한 노부모 부양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의 부양 기능이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가구주 부모의 실제 부양 상황을 통계청 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자녀에 의한 부양(전국 평균)이 1994년에는 62.1%였던 것이 2002년에는 53.3%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2-21>. 자녀 중에서도 장남에 의한 부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2-20. 지역별 가구형태의 변화

단위: %

가구형태	전체		도시		농촌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인 가구	2.6	5.1	2.5	4.6	3.0	6.8
부부 가구	5.2	8.8	4.3	6.8	8.0	16.4
2세대 가구	71.0	70.4	74.3	73.9	61.5	56.8
3세대 이상 가구	18.7	13.6	16.2	12.4	26.3	18.5
기타 일반 가구	2.4	2.1	2.8	2.3	1.2	1.4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표 2-21. 가구주 부모의 생계 부양자

단위: %

구분	계	자녀					스스로 해결	기타
		소계	장남	아들들	딸들	아들과 딸들		
1994								
전국	100.0	62.1	33.1	16.3	1.6	11.1	37.6	0.3
시부	100.0	58.8	29.9	15.8	1.6	11.4	40.9	0.3
군부	100.0	77.8	48.4	18.3	1.5	9.6	22.1	0.1
1998								
전국	100.0	58.2	27.0	19.8	1.8	9.6	41.6	0.2
시부	100.0	55.8	24.5	19.4	1.8	9.9	44.0	0.2
군부	100.0	73.0	42.3	21.9	1.3	7.5	26.8	0.2
2002								
전국	100.0	53.3	22.7	17.5	1.7	11.4	46.3	0.5
시부	100.0	51.3	20.7	17.1	1.7	11.8	48.2	0.5
군부	100.0	66.5	36.1	20.2	1.2	8.9	33.0	0.5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연도.

다음에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를 살펴보면, 장남의 책임이라는 의식은 크게 줄어든 반면, 자녀 모두의 공동책임과 사회(및 기타)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커지고 있다<표 2-22>. 1979년에는 ‘장남’의 책임이라는 비율이 30.6%를 차지했으나 2002년에는 15.1%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비해 자녀 모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모 세대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1979년에 36.6%에 달했다.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자녀에게만 노후를 의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자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9.6%로 크게 낮아졌다. 그 대신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같은 기간 3.6%에서 18.2%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때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기도 어렵지만 본인 혼자 노후를 준비하기도 점점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2-22.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연도	가 족						자립	사회 및 기타
	소계	장남	아들모두	딸	능력있는 자녀	아들·딸 모두		
1979	59.8	30.6	22.2	0.6	6.4		36.6	3.6
1983	71.7	22.1	21.7	0.8	27.1		20.5	7.8
1988	79.3	25.2	17.8	0.5	35.8		15.8	5.0
1991	78.7	18.3	13.8	0.4	46.2		15.4	5.9
1994	87.3	19.6	11.4	-	27.2	29.1	9.9	2.9
1998	89.9	22.4	7.0	0.5	45.5	14.5	8.1	2.0
2002	70.7	15.1	13.9	0.1	21.2	19.5	9.6	18.2

자료: 강성호. 2004. “부양의식 변화 및 노후준비수단의 변화 추이 분석”. 『연금포럼』 VOL.13. 국민연금연구원. pp:90~95.

4.2.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실태 열악

현재의 고령농업인들은 우리나라 격동의 근세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이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6.25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의 풍요로운 경제 발전을 이룩한 주역들이다. 갖은 고생을 마다않고 국가적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높은 교육열로 산업역군들을 길러냈다. 자신들의 노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나, 막상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실태는 매우 어렵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중 연간 가구소득이 1.5천만 원 이하가 32.8%나 되었다<표 2-10 참조>. 또한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고령농가의 비율이 34.8%에 달한다<표 2-13>. 이러한 상황은 근로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고연령이 될수록 심화된다. 고 연령이 될수록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이 커지고는 있으나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보편화되지 않아 아

표 2-23. 연령별 생활비 대비 실제소득 비율

단위: %

구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최소생활비 대비	99.6	78.0	59.1	42.4
적정생활비 대비	69.2	54.0	41.3	28.7

자료: 김시원 등(2006)

직은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고령농업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지 못해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노인들의 노후 소득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적정생활비는 물론 최소생활비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3>.

공적 연금제도가 보편화되면, 이러한 노후 소득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노후 소득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노인 간 소득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특히 은퇴 전 직업 유형에 따라 노인 간 소득 격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원천징수를 통해 반강제적으로 공적 연금제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농업인들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현재의 청장년 농업인들이 노후 소득대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고령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노동에 의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표 2-24>. 그런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이나 농업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50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필요성

표 2-24. 도·농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존 소득원

단위: %

구분	본인의 노동	자녀의 지원	국가의 지원	저축	국민연금	임대료	무응답	계
농촌	68.5	18.9	6.1	3.7	1.5	1.2	0.1	100.0
도시	45.6	27.8	8.9	15.2	-	2.5	-	100.0

자료: 농림부, 2004.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4.3. 농업인 스스로 노후 준비 필요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는 생각도 하기 어렵다.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국가나 후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본인들의 노후 생활은 막막할 뿐이다. 청장년 농업인들도 미리미리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장수(長壽)가 불행(不幸)’이 되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²⁵ 국민연금 납부 대상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노후 대책을 조사한 결과, ‘계속 농사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37.7%)이었다. 청장년 농업인들도 노후 소득 확보의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령농업인처럼 본인의 노동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집중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나친다면 장차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렵지 않다.

노후 준비는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 나이가 많이 들어 노후를 준비하기

²⁵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3. 농가 경제·사회·복지실태조사 보고서.

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다. 당장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어렵고 자녀교육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긴 안목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국민연금도 2008년부터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공적 연금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수록 노후 준비 여부에 따라 노후의 소득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을 모색해 보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실태 분석

제 3 장

1. 조사 개요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64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내용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2005년도 농업센서스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추출방법에 의하여 50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표는 연구진이 작성하여 예비조사와 연구자문위원회 및 검토회의 등을 거쳐 완성하였다. 현지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의 조사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당초 64세 이하 농업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나 조사대상 조사구내에서 64세 이하(특히 40대 이하) 농업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5세 이상 농업인도 일부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연령대별로 보면 60~64세 농업인이 30.6%로 가장 많고, 45~49세 20.6%, 55~59세 16.8%, 50~54세 15.8%의 순이다. 대략 40대, 50대, 60대가 비슷하도록 조사하였다.

지대별로는 평야지대가 42.4%로 가장 많고, 도시근교와 중산간지역은 각각 25.2%, 26.4%로 비슷하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41.4%로 가장 많고, 중졸 27.0%, 초졸 24.0%, 대졸 이상 4.6%, 무학 3.0%의 순이다.

소득규모별로 보면, 1,000~2,000만 원 이하가 25.6%로 가장 많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농업인은 8.4%에 불과하다.

54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실태 분석

경지면적규모별로 보면, 2,000평 이하 농업인이 절대다수인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00~4,000평 이하 농업인(30.6%)이다.

표 3-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농가수	비율
전체	500	100
연령별		
45세 이하	46	9.2
45~49세 이하	103	20.6
50~54세 이하	79	15.8
55~59세 이하	84	16.8
60~64세 이하	153	30.6
65세 이상	35	7.0
지대별		
도시근교	126	25.2
평야	212	42.4
중산간	132	26.4
산간	30	6.0
학력별		
무학	15	3.0
초졸	120	24.0
중졸	135	27.0
고졸	207	41.4
대졸이상	23	4.6
연간소득규모별		
1,000만 원 이하	41	8.2
2,000만 원 이하	128	25.6
3,000만 원 이하	113	22.6
4,000만 원 이하	104	20.8
5,000만 원 이하	72	14.4
5,000만 원 초과	42	8.4
경지면적규모별		
2,000평 이하	231	46.2
4,000평 이하	153	30.6
6,000평 이하	46	9.2
8,000평 이하	27	5.4
10,000평 이하	17	3.4
10,000평 초과	26	5.2

2. 국민연금 관련

2.1. 국민연금 가입 실태

조사대상인 500명의 농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66명으로 53.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가입률이라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률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50~54세가 62.0%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이 25.7%로 가장 낮다. 65세 이상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은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에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지대별로는 산간지대가 60.0%로 타 지대보다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수가 가장 적어 지대별로 가입률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력별로는 중졸이 60.7%로 가장 높고, 무학이 40.0%로 가장 낮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졸 이상 농가가 초졸 이하 농가보다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규모별로는 4,000~5,000만 원 소득규모의 농가가 59.7%로 가장 높고, 1,000만 원 이하 농가가 43.9%로 가장 낮다.

이상 응답자 특성별로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0대 연령층, 대졸 이상 학력층, 5,000만 원 이상의 소득규모층 및 경지면적 10,000평 이상의 농가의 가입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젊고, 학력도 높고 경제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가 3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별다른 이유 없음” 20.1%,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서” 19.7%, “잘 알지 못해서” 9.8%의 순이다<표 3-3>. 국민연금에 가입

표 3-2. 국민연금 가입 여부

단위: 명, %

	표본수	가입	미가입	통계값
전체	500	53.2	46.8	
연령별				
45세 이하	46	54.3	45.7	df=6 χ ² =18.407 P=0.0053
45~49세 이하	103	47.6	52.4	
50~54세 이하	79	62.0	38.0	
55~59세 이하	84	54.8	45.2	
60~64세 이하	153	57.5	42.5	
65~69세 이하	27	33.3	66.7	
70세 이상	8	0.0	100.0	
지대별				
도시근교	126	54.8	45.2	df=3 χ ² =0.873 P=0.8319
평야	212	51.9	48.1	
중산간	132	52.3	47.7	
산간	30	60.0	40.0	
학력별				
무학	15	40.0	60.0	df=4 χ ² =6.773 P=0.1484
초졸	120	45.8	54.2	
중졸	135	60.7	39.3	
고졸	207	53.6	46.4	
대졸 이상	23	52.2	47.8	
연간소득규모별				
1,000만 원 이하	41	43.9	56.1	df=5 χ ² =5.173 P=0.3952
2,000만 원 이하	128	48.4	51.6	
3,000만 원 이하	113	56.6	43.4	
4,000만 원 이하	104	55.8	44.2	
5,000만 원 이하	72	59.7	40.3	
5,000만 원 초과	42	50.0	50.0	
경지면적규모별				
2,000평 이하	231	49.8	50.2	df=5 χ ² =8.712 P=0.1211
4,000평 이하	153	55.6	44.4	
6,000평 이하	46	60.9	39.1	
8,000평 이하	27	51.9	48.1	
10,000평 이하	17	70.6	29.4	
10,000평 초과	26	46.2	53.8	

표 3-3.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단위: 명, %

	표본수	경제적 부담	국민연금 불신	개인연금 충분	인지도 부족	이유 없음	기타	통계
전체	234	38.9	19.7	0.4	9.8	20.1	11.1	
연령별								
45세 이하	21	19.0	38.1	0.0	19.0	19.0	4.8	df=30 χ ² =61.122 P=0.0007
45~49세 이하	54	42.6	31.5	0.0	0.0	22.2	3.7	
50~54세 이하	30	46.7	20.0	0.0	13.3	16.7	3.3	
55~59세 이하	38	28.9	5.3	0.0	7.9	39.5	18.4	
60~64세 이하	65	41.5	15.4	1.5	16.9	10.8	13.8	
65~69세 이하	18	33.3	11.1	0.0	5.6	16.7	33.3	
70세 이상	8	75.0	12.5	0.0	0.0	12.5	0.0	
지대별								
도시근교	57	45.6	14.0	0.0	5.3	19.3	11.1	df=15 χ ² =17.251 P=0.3041
평야	102	36.3	17.6	1.0	14.7	23.5	11.1	
중산간	63	36.5	30.2	0.0	6.3	14.3	11.1	
산간	12	41.7	8.3	0.0	8.3	25.0	11.1	
학력별								
무학	9	33.3	11.1	0.0	44.4	11.1	0.0	df=20 χ ² =27.899 P=0.1118
초졸	65	50.8	10.8	0.0	4.6	20.0	13.8	
중졸	53	37.7	22.6	0.0	7.5	18.9	13.2	
고졸	96	32.3	26.0	1.0	11.5	19.8	9.4	
대졸 이상	11	36.4	9.1	0.0	9.1	36.4	9.1	
연간소득규모별								
1,000만 원 이하	23	65.2	8.7	0.0	4.3	13.0	8.7	df=25 χ ² =29.785 P=0.2324
2,000만 원 이하	66	40.9	15.2	1.5	10.6	21.2	10.6	
3,000만 원 이하	49	42.9	16.3	0.0	16.3	14.3	10.2	
4,000만 원 이하	46	34.8	26.1	0.0	8.7	19.6	10.9	
5,000만 원 이하	29	17.2	37.9	0.0	6.9	20.7	17.2	
5,000만 원 초과	21	33.3	14.3	0.0	4.8	38.1	9.5	
경지면적규모별								
2,000평 이하	116	43.1	17.2	0.0	9.5	19.0	11.2	df=25 χ ² =17.327 P=0.8696
4,000평 이하	68	39.7	17.6	1.5	8.8	17.6	14.7	
6,000평 이하	18	38.9	16.7	0.0	5.6	33.3	5.6	
8,000평 이하	13	46.2	23.1	0.0	15.4	15.4	0.0	
10,000평 이하	5	0.0	40.0	0.0	20.0	20.0	20.0	
10,000평 초과	14	7.1	42.9	0.0	14.3	28.6	7.1	

58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실태 분석

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별다른 이유 없음” 20.1%, “국민연금을 불신” 19.7% 및 “인지도 부족” 9.8% 등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젊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국민연금 불신’과 ‘별다른 이유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앞에서 살펴본 국민연금 가입률 실태 결과와 결부시켜 본다면, 젊고 학력도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경제력이 있는 농업인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제고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3-4. 국민연금 가입자(59세 이하)의 가입년수 분포

단위: %

	표본수	5년 이하	5~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전체	168	12.5	39.3	30.4	15.5	2.4
45세 이하	25	24.0	44.0	20.0	12.0	0.0
45~49세 이하	49	14.3	44.9	30.6	6.1	4.1
50~54세 이하	49	8.2	32.7	34.7	22.4	2.0
55~59세 이하	45	8.9	37.8	31.1	20.0	2.2

표 3-5. 국민연금 가입자(59세 이하)의 최초가입연령 분포

단위: %

	표본수	30세 이하	31~35세	36~40세	40~45세	45세 이상
전체	168	10.7	22.0	31.0	23.8	12.5
45세 이하	25	36.0	36.0	24.0	4.0	0.0
45~49세 이하	49	12.2	30.6	34.7	16.3	6.1
50~54세 이하	49	6.1	22.4	36.7	26.5	8.2
55~59세 이하	45	0.0	4.4	24.4	40.0	31.1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234명 중에서 금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단지 10명(4.3%)에 불과해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59세 이하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년수를 살펴보면, 51.8%가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이다<표 3-4>. 국민연금 최초 가입연령 분포를 보면, 36~40세가 31.0%로 가장 많고, 40세 이상에서 가입한 비율도 36.3%에 달한다<표 3-5>.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최초 가입연령은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초가입연령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최초가입연령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46.5세이다. 그러나 특수연금의 최초가입연령(28.5세)에 비하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표 3-6>.

표 3-6. 공적연금 가입자의 가입이력 및 예상수급연령

단위: 세, 년

구분		최초가입연령	보험료납부기간	예상수급연령
직장근로자	국민연금	41.8	9.1	60.8
	특수연금	28.5	25.8	60.6
자영업자	국민연금	44.1	9.6	61.0
비취업자	국민연금	47.7	7.8	60.1
계	국민연금	46.5	8.8	60.9
	특수연금	28.5	27.7	60.6

자료: 김시원 등(2006), p.113.

2.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관련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2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의 농업인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은 71,120원이다. 소득계층별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보험료 수준을 보면, 1,000만 원 이하 계층만

60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실태 분석

표 3-7.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수준

단위: 명, 원, %

	표본수	월 평균 보험료	2만 원 이하	4만 원 이하	6만 원 이하	8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상
전체	210	71,120	8.6	18.6	35.2	17.6	10.0	10.0
연령별								
45세 이하	24	107,464	4.2	25.0	25.0	16.7	16.7	12.5
45~49세 이하	49	57,990	6.1	22.4	32.7	20.4	16.3	2.0
50~54세 이하	49	66,459	6.1	22.4	30.6	18.4	6.1	16.3
55~59세 이하	43	83,181	14.0	11.6	39.5	11.6	9.3	14.0
60~64세 이하	43	57,113	11.6	14.0	44.2	20.9	4.7	4.7
65~69세 이하	2	88,500	0.0	0.0	50.0	0.0	0.0	50.0
지대별								
도시근교	55	94,759	5.5	14.5	23.6	18.2	12.7	25.5
평야	89	66,644	11.2	18.0	36.0	22.5	7.9	4.5
중산간	56	53,722	7.1	25.0	46.4	12.5	7.1	1.8
산간	10	76,450	10.0	10.0	30.0	0.0	30.0	20.0
학력별								
무학	3	36,333	33.3	33.3	33.3	0.0	0.0	0.0
초졸	36	60,221	11.1	13.9	38.9	22.2	5.6	8.3
중졸	60	75,697	10.0	20.0	35.0	15.0	6.7	13.3
고졸	100	72,247	6.0	20.0	36.0	18.0	12.0	8.0
대졸 이상	11	80,545	9.1	9.1	18.2	18.2	27.3	18.2
연간소득규모별								
1,000만 원 이하	11	58,175	9.1	36.4	18.2	18.2	0.0	18.2
2,000만 원 이하	46	58,863	8.7	19.6	32.6	15.2	15.2	8.7
3,000만 원 이하	51	74,663	5.9	19.6	45.1	21.6	0.0	7.8
4,000만 원 이하	49	75,192	14.3	24.5	26.5	16.3	14.3	4.1
5,000만 원 이하	34	72,791	5.9	8.8	38.2	23.5	8.8	14.7
5,000만 원 초과	19	84,884	5.3	5.3	42.1	5.3	21.1	21.1
경지면적규모별								
2,000평 이하	89	74,283	5.6	19.1	37.1	15.7	11.2	11.2
4,000평 이하	65	73,261	16.9	10.8	36.9	20.0	6.2	9.2
6,000평 이하	25	60,040	0.0	28.0	48.0	8.0	8.0	8.0
8,000평 이하	12	48,500	8.3	41.7	33.3	8.3	8.3	0.0
10,000평 이하	8	88,750	12.5	0.0	0.0	37.5	25.0	25.0
10,000평 초과	11	69,427	0.0	27.3	9.1	36.4	18.2	9.1

2~4만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4~6만 원 수준이다. 경지면적규모별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보험료 수준을 보면, 8,000평 이상 계층은 6~8만 원 수준이고, 8,000평 이하 계층은 모두 4~6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1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을 보면,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또는 1,000~2,000평 규모의 농업인이 상위 계층의 농업인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인의 보험료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이 연간소득이나 경지면적규모와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연간소득 및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즉, 현재 농업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 수준이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농업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8.7%에 달했다. 소득규모계층별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농업인은 거의 대부분(91.9%)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3-8.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수준과 연간소득 및 자산과의 관계 분석

종속변수	국민연금보험료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절편	2941.091	175.6582	16.74326	1.55E-40
연간소득	0.001573	0.001462	1.075909	0.283203
종속변수	국민연금보험료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절편	2937.243	154.0455	19.06737	1.05E-47
자산합계	0.003228	0.001742	1.852844	0.065308

또한, 현재의 보험료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대부분의 농가가 장차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를 상향하여 납부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관련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3.4%에 불과하다. 경영주의 연령 대별로 보면, 40대 후반이 배우자 가입률이 가장 높고, 경영주 학력이 높을 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영주 거의 대부분(94.3%)이 앞으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의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2.4.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인지 여부

현재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31.4%만이 잘 알고 있고, 21.8%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개인연금 관련

3.1. 개인연금 가입 실태

조사대상 농업인 500명 중 60명만(12.0%)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개인연금 가입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두드러진 경향은 아니지만, 50대 초반 이하 연령층, 학력이 높을수록,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대별로 보면, 산간지대에서는 개인연금을 가입한 농가가 한 농가도 없는데, 가구주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타 지대보다 높았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조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공통적이다. 제6차 노동패널자료에 의하면 개인연금 가입률은 11.39%인데 비해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22.29%나 된다. 그러나 최근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06) 결과에 의하면 개인연금 가입률은 3.9%밖에 안된다.

3.2. 개인연금 가입 계기

개인연금에 가입한 60명의 가입 계기를 보면, 보험 판매원 등 ‘주위의 권유로 가입’한 농업인이 40명(66.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에 대한 이해와 권유가 가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가입한 농업인들(60명)의 개인연금 추가 가입 여부를 물어본 결과, 단 2명만이 추가 가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권유에 의해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자발적으로 개인연금을 노후 소득대책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3.3.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9.8%로 가장 높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가 18.4%로 나타났다. 연간소득이나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경향이 높고, 반대로 연간소득이나 경지면적이 클수록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60명 중 국민연금에 미 가입한 농업인은 23명 (38.3%)인데, 이들의 대다수는 연간소득 3,000만 원 이상이다. 이들의 국민연금 미 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43.5%로 가장 많고, “경제적 부담” 26.1%, “별다른 이유 없음” 21.7%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보면,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또는 오해 등이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노후 준비에 대한 태도

4.1. 노인의 적정 연령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한 연령대를 물어본 결과, 70~75세가 43.0%로 가장 높고, 65~69세 27.6%, 75세 이상 20.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3.2%가 70세 이상을 노인의 적정 연령대로 보고 있어 인구 고령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다가 적절하게 은퇴할 적정 연령을 물어본 결과, 70~74세가 38.0%로 가장 많고²⁶, 그 다음이 65~69세 22.8%, 75~79세 22.6%의 순서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75세 이상을 적정 은퇴연령으로 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은퇴연령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특별한 노후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고령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영농은퇴 연령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²⁶ 김정호 등(2006)이 농업인 법적 은퇴 연령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 (53.2%)가 70세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65세(32.0%)였다.

75% 정도가 70세 이상이라고 하였으며, 75세 이상도 37%나 되었다.

본인의 기대수명²⁷에 대해서는 76.8%가 80세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기대수명은 81.6세로 나타났다. 점차 평균수명이 연장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만큼 고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2.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

노후 준비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생각은 하였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이 다수(53.0%)이며, 생활에 급급하여 노후 준비를 할 겨를이 없는 농업인도 23.2%에 달하였다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로는 ‘건강’ 50.0%, ‘생활비 마련’ 26.2%, ‘의료비’ 14.4%의 순이었다. 건강과 의료비가 유사한 분야라고 볼 때, 다수의 농업인들은 노후에 생활비 확보보다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건강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며, 연간소득이 작을수록 생활비 마련과 의료비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노후 준비와 관련하여 소득 못지 않게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3. 농업인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농업인도 정년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0%이며, 나머지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²⁷ 정확한 연령 X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기대여명[e_x]이라고 하며, 출생시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농업인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파악했다는 측면에서는 기대여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예상 수명을 대답했다는 점에서는 기대수명으로 볼 수도 있다.

농업인도 직장인과 비슷한 퇴직연금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하고, “관심 없다”가 33.6%, “있으면 좋을 것 같다”가 52.4%로 농업인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농업자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의 커다란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4. 노후 생활비 관련

노후에 부부가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생활비 수준을 물어본 결과, 월평균 1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경지면적이 클수록 최소생활비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대별로는 산간지대만이 99만 원/월로 가장 낮고, 타 지역들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3-9>.

노후에 부부가 부족하지 않고 그런대로 생활하기 위한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15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특성별 경향은 최소생활비와 같다.

노후에 부부가 여유있게 생활하기 위한 여유생활비는 월평균 201.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특성별 경향은 최소생활비와 같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경지면적이 클수록 예상 생활비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 특성별로도 생활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최소생활비 < 적정생활비 < 여유생활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예상 노후 최소생활비 수준

단위: 명, 만 원, %

	표본수	월평균 생활비	100만 원 이하	100~ 149만 원	150~ 199만 원	200~ 249만 원	250~ 300만 원	통계
전체	500	120.2	18.6	50.6	17.6	10.2	3.0	
연령별								
45세 이하	46	140	8.7	39.1	37.0	6.5	8.7	df=24 χ ² =45.571 P=0.005
45~49세 이하	103	125.3	15.5	48.5	20.4	11.7	3.9	
50~54세 이하	79	119.5	20.3	48.1	17.7	11.4	2.5	
55~59세 이하	84	122.1	15.5	47.6	23.8	11.9	1.2	
60~64세 이하	153	112.9	22.9	55.6	10.5	8.5	2.6	
65~69세 이하	27	107.3	18.5	70.4	0.0	11.1	0.0	
70세 이상	8	114	50.0	37.5	0.0	12.5	0.0	
지대별								
도시근교	126	125.6	18.3	46.0	19.0	11.1	5.6	df=12 χ ² =28.803 P=0.0042
평야	212	119.9	15.6	55.7	17.9	9.0	1.9	
중산간	132	120.5	16.7	50.0	18.2	12.9	2.3	
산간	30	99	50.0	36.7	6.7	3.3	3.3	
학력별								
무학	15	100.7	33.3	60.0	6.7	0.0	0.0	df=16 χ ² =41.605 P=0.0005
초졸	120	113.4	30.0	44.2	11.7	11.7	2.5	
중졸	135	115.8	13.3	60.7	16.3	8.9	0.7	
고졸	207	124.7	15.9	49.3	20.8	9.7	4.3	
대졸 이상	23	154.8	4.3	30.4	34.8	21.7	8.7	
연간소득규모별								
1,000만 원 이하	41	98.29	36.6	51.2	7.3	4.9	0.0	df=20 χ ² =67.315 P≤.0001
2,000만 원 이하	128	110	21.9	57.0	12.5	8.6	0.0	
3,000만 원 이하	113	112.8	22.1	51.3	20.4	5.3	0.9	
4,000만 원 이하	104	124.8	16.3	46.2	22.1	11.5	3.8	
5,000만 원 이하	72	133.2	5.6	55.6	18.1	16.7	4.2	
5,000만 원 초과	42	159.3	9.5	31.0	23.8	19.0	16.7	
경지면적규모별								
2,000평 이하	231	118.8	18.2	49.4	21.2	9.1	2.2	df=20 χ ² =27.686 P=0.117
4,000평 이하	153	114.4	24.2	51.6	12.4	8.5	3.3	
6,000평 이하	46	132.8	8.7	54.3	17.4	15.2	4.3	
8,000평 이하	27	120	22.2	40.7	25.9	11.1	0.0	
10,000평 이하	17	123.5	5.9	64.7	17.6	11.8	0.0	
10,000평 초과	26	143.5	11.5	50.0	7.7	19.2	11.5	

4.5. 노후 준비 태도

노후 준비를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본인이 주로 하고 국가가 일부 보조”(36.8%),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26.2%), “본인이 하되 가족이 지원”(22.2%), “국가의 사회보장제도”(14.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인의 노후 준비는 본인이 주가 되어 하되, 국가나 가족이 일부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본인의 노후 준비를 남에게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노후 준비 중 장차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대책을 물어본 결과, 국민연금이 66.8%로 가장 많고, 농업소득(24.4%), 예·적금(5.4%)의 순이었다.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농업소득을 노후의 주 생활비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생활비 확보를 위해 고령까지도 영농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한편 경지면적이 8,000평 이상의 경영주들도 농업소득을 주요한 노후 생활비 확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전업농들의 경우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와 자산 증식 등을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물어본 결과, 63.4%가 50% 미만의 준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2.0%는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생활비를 추가로 조달할 방법을 물어본 결과, 농업소득 28.8%, 국민연금 19.5%, 예·적금 17.3%의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영농에 종사하면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소득확보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6. 역모기지론 관련

역모기지론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1.6%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여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역모기지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간지대에서 가장 인지도가 낮고,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경지면적이 클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역모기지론이 농촌지역에도 활성화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절대다수인 76.8%가 활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경지면적이 클수록 역모기지론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모기지론을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65.6%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여 자산의 자녀 상속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상 또는 경지면적이 4,000평 이상인 농가들은 노후 대책이 충분한 것도 역모기지론을 활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들고 있다.

장차 영농을 중단할 경우 농지 처분 방법을 조사한 결과, 자녀 상속이 45.5%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지임대 25.8%, 농지처분 후 노후 생활비로 사용 13.2%의 순이다. 역모기지론 미활용 이유와 마찬가지로 농지자산의 자녀 상속에 대한 의식이 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1. 공적연금 가입 실태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방안으로는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방안,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방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규모는 작지만 수익성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저소득 농가의 노후 준비에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하여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보험료 보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청장년 농업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준이 낮아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 준비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비율도 낮지만, 가입한 경우에도 표준소득 등급이 낮은 수준에서 가입하고 있다. 농업인의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준비로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조사한 농가경제조사(2006)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장년 농업인의 범주를 40세 이상 60세 이하인 농가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농가경제 전체표본 3,047호 중 1,120호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청장년 농업인의 소득문제를 분석하였다.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40, 50대 농가가 노후 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한 규모를 분석하여 보면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준소득 최소 등급인 5등급 이하

표 4-1. 청장년(40, 50대) 농가의 공적연금 납입규모별 농가비율(2006)

단위: %, 호

연령	1~5등급	6~10등급	11~15등급	16~20등급	20~30등급	30등급 이상	합계
40~44세	28.7	1.1	4.6	21.8	36.8	6.9	87(100)
45~49세	26.6	0.9	5.7	16.6	38.0	12.2	229(100)
50~54세	23.1	2.3	5.3	23.1	34.2	12.0	342(100)
55~60세	19.9	1.3	3.9	23.2	35.9	15.8	462(100)
전체 평균	22.9	1.5	4.7	21.7	35.9	13.2	1120(100)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로 가입한 농가의 비율이 22.9%이고, 20~30등급에 가입한 농가의 비율도 35.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장년 농업인의 29.1%의 농가가 국민연금 납입료의 50%를 보조하는 15등급 이하의 낮은 표준소득 기준으로 가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적연금 가입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업인은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연령대별로 공적연금 납입 실태를 보면, 40~44세 농가의 경우 5등급 이하로 가입한 농가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28.7%이고, 30등급 이상으로 가입한 농가의 비율도 6.9%에 불과하여 노후 준비를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5~60세 농가의 경우에는 5등급 이하로 가입한 농가의 비율이 19.9%이고, 30등급 이상 가입한 농가 비율도 15.8%에 이르고 있다. 연령면에서 보면 젊은 농가일수록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

경지규모별 공적연금 납입실태를 보면, 0.5~1.0ha 사이의 소농의 가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5등급 이하로 납입한 농가의 비율이 27.9%로 가장 높고, 30등급 이상 가입한 농가의 비율도 9.4%에 불과하다. 2.0ha 이상의 대농의 경우에는 5등급 이하로 가입한 농가의 비율이 17.0%이고, 30등급 이상으로 가입한 농가의 비율도 17.5%로 가장 높다.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노후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표 4-2. 청장년 농가의 경지규모별 공적연금 납부규모별 분포(2006)

단위: %, 호

	1~5등급	6~10등급	11~15등급	16~20등급	20~30등급	30등급 이상	합계
0.5ha 미만	26.8	1.3	5.5	18.4	34.2	13.9	310(100)
0.5~1.0ha	27.9	2.3	4.9	21.9	33.6	9.4	265(100)
1.0~2.0ha	19.3	1.6	3.7	25.8	37.0	12.7	322(100)
2.0ha 이상	17.0	0.9	4.9	20.2	39.5	17.5	223(100)
평균	22.9	1.5	4.7	21.7	35.9	13.2	1,120(100)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표 4-3. 청장년 농가의 가계비 항목별 지출 구성 (2006)

단위: 천 원, %

	가계비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 의료비	교통 통신비	기타소비 지출	공적연금 납부금	사적연금 납부금	기타비소비 지출
40~44세	30,676	20.1	8.8	4.5	12.1	37.0	2.1	1.7	12.3
45~49세	35,782	18.7	8.6	3.4	11.2	34.8	2.1	1.7	17.9
50~54세	38,002	15.6	5.2	3.5	9.9	36.0	2.0	1.4	24.6
55~60세	36,100	15.8	1.9	4.0	9.1	37.0	2.4	1.3	26.6
평균	36,194	16.6	4.8	3.8	10.0	36.3	2.2	1.4	23.3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청장년 농업인의 가계비로 평균 36,194천 원을 지출하고 있고, 젊은 세대 농가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청장년 농업인의 경우 노후 준비를 위한 공적연금 납입액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2%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연금납입액은 1.4%로 더 낮은 상태로 연금에 의한 노후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그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이 인식의 부족 탓인지 준비여력이 부족한 탓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국민연금 납입 가능성 분석

청장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40, 50대 농가의 농가소득 수준을 보면, 평균 43,367천 원으로 매우 높고, 농업소득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4-4>. 이전소득의 비중은 8.3%로 낮은 수준이다. 토지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토지자산의 규모는 1억 4,315만 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가계비 지출은 36,194천 원이어서 평균적으로 노후 준비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40~44세 농가가 비교적 낮은 소득수준이고, 순토지자산도 7,444만 원으로 아직 자본축적이 충분하지 않다. 생산수단인 농지를 더 확보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반면, 50~54세 농가가 가장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청장년 농가의 소득규모별 분포를 보면, 가장 많은 농가인 32.3%가 소득규모 3~5천만 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농가의 비중도 20.4%나 되고, 특히 40~44세 농가에서는 저소득 농가의 비율이 25.3%로 가장 높다. 농가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의 비중은 31.0%이고, 40~44세 농가는 이 비중이 19.5%에 불과한 반면에 45~49세 농가는 32.3%에 이르고 있다. 연령이 높은 농가일수록 고소득

표 4-4. 청장년 농가의 농가소득 및 자산규모(2006)

단위: 천 원, %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순토지자산
40~44세	36,149	32.3	40.7	13.3	74,436
45~49세	45,238	43.9	40.6	7.1	127,687
50~54세	45,680	42.3	35.0	7.8	137,828
55~60세	42,087	39.4	36.1	8.4	167,698
평균	43,367	40.9	37.0	8.3	143,151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농가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농가소득이 가계비 지출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국민연금 가입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농가소득 대비 가계비지출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40, 50대 청장년 농가의 경우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38.0%에 이르고 있다<그림 4-1>. 이와 같이 가계비 대비 소득 비율별 농가분포를 보면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소득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있다.

농가소득이 가계비 지출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을 보면<표 4-6>, 농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농가에서는 대부분의 농가인 84.7%가 이에 해당된다. 소득수준이 2~3천만 원인 농가도 48.0%의 농가가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5천만 원 이상인 농가의 경우에는 13.2%의 농가만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45~49세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이 2~3천만 원 수준이어도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54.1%에나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저소득 농가는 가계비 충족도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청장년 농가의 비율이 3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5. 청장년 농가의 소득규모별 농가분포(2006)

단위: %, 호

소득규모	40~44세	45~49세	50~54세	55~60세	전체
2천만 원 이하	25.3	18.8	20.2	20.6	20.4
2~3천만 원	25.3	16.2	15.2	18.4	17.5
3~5천만 원	29.9	32.8	28.7	32.3	31.1
5천~1억 원	16.1	25.3	31.0	22.3	25.1
1억 원 이상	3.4	7.0	5.0	6.5	5.9
합 계	87 (100)	229 (100)	342 (100)	462 (100)	1,120 (100)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그림 4-1. 청장년 농가 연령별 소득/가계비 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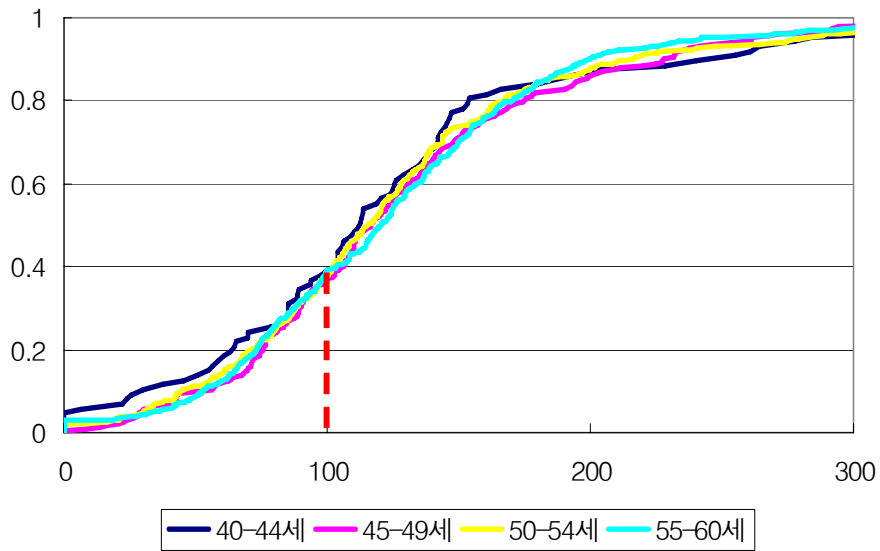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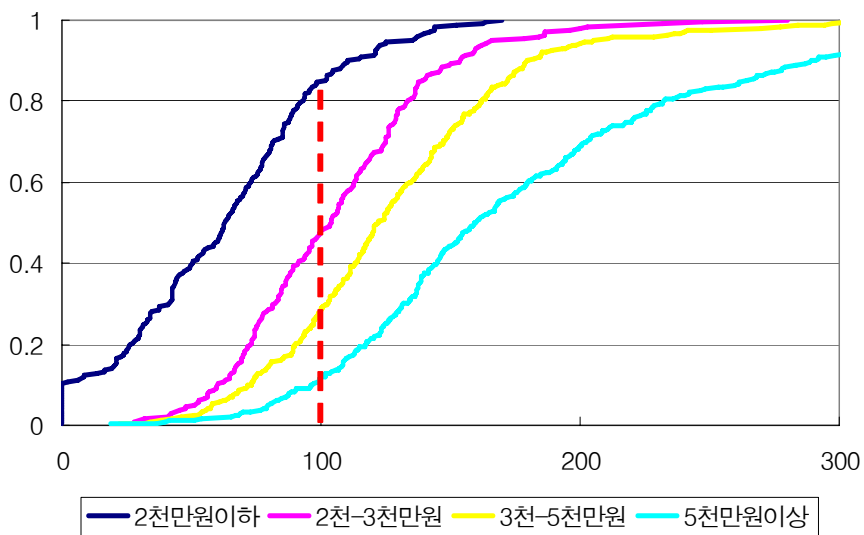


그림 4-2. 청장년 농가 소득규모별 소득/가계비 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



경지규모별, 연령별로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을 분석하면<표 4-7>, 0.5ha 이하의 영세농가에서는 35.8%의 농가가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1.0~2.0ha 이상의 농가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인 41.0%의 농가가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40~44세 농가에서는 2.0ha 이상의 농가이어도 42.9%의 농가가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표 4-6. 청장년 농가의 연령별, 소득규모별 가계비 미충족 농가 비율
단위: %

	40~44세	45~49세	50~54세	55~60세	평균
2천만 원 이하	95.5	88.4	84.1	81.1	84.7
2~3천만 원	27.3	54.1	44.2	52.9	48.0
3~5천만 원	23.1	29.3	34.7	24.2	28.2
5천~1억 원	0.0	8.6	13.2	17.5	13.2
1억 원 이상	0.0	0.0	0.0	10.0	4.5
합 계	37.9	37.1	37.7	38.7	38.0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표 4-7. 청장년 농가의 연령별, 경지규모별 가계비 미충족 농가 비율
단위: %

	40~44세	45~49세	50~54세	55~60세	평균
0.5ha 미만	37.8	40.5	36.0	31.8	35.8
0.5~1.0ha	42.1	29.6	40.5	40.7	38.5
1.0~2.0ha	29.4	47.6	37.0	42.3	41.0
2.0ha 이상	42.9	23.7	37.7	39.2	36.3
평균	37.9	37.1	37.7	38.7	38.0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그림 4-3. 청장년 농가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별 농가누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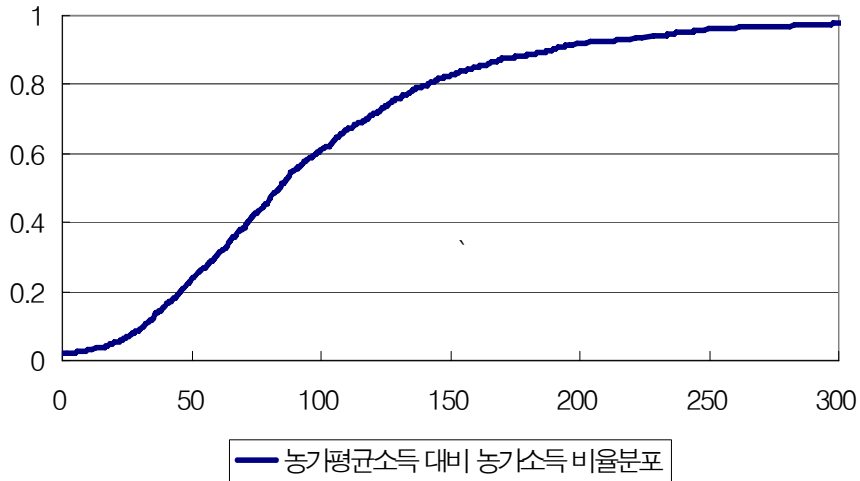


표 4-8. 연령별, 경지규모별 평균소득 이하 농가 비율(2006)

단위: %

	40~44세	45~49세	50~54세	55~60세	평균
0.5ha 미만	81.1	62.2	68.5	68.2	68.4
0.5a~1.0ha	73.7	51.9	67.9	74.1	67.5
1.0a~2.0ha	58.8	69.8	47.0	61.3	58.4
2.0ha 이상	71.4	42.1	37.7	52.9	47.5
평균	73.6	58.5	55.8	64.1	61.2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득수준이므로 농가가 소득규모별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40~60세 농가의 평균소득인 4,336만 원과 농가소득 비율을 산출하여 농가분포를 구하였다<그림 4-3>. X축에서 100에 해당하는 것이 이와 동일한 소득수준이다. 이 비율이 전체적으로 61.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소득규모별로 농가가 동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지규모별, 연령별 평균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얻은 농가의 비율을 보면, 40~44세 농가에서는 73.6%의 농가가 여기에 해당되고, 50~54세 농가에서는 55.8%의 농가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0.5ha 미만의 농가에서는 68.4%의 농가가 여기에 해당되고, 2.0ha 이상의 농가에서는 47.5%의 농가만이 해당된다. 40~44세의 젊은 농가이고 경영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40~60세 농가의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경로별 분석

농가의 노후 준비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일찍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표준소득 14등급²⁸까지는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더 많은 소득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월 23,400원의 보험료 보조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표준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연금을 불입하고,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였다. 8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고, 표준소득 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국민연금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였다. 즉, 국민연금에 납입한 전체 보험료의 현재가치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의 현재가치를 비교한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를 산출한 방식이다<표 4-9>. 이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보조한 금액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본인부담액만 고려하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유형별 현재가치화한 비용편익을 분석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 순현재가치(NPV)가 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만

²⁸ 매년 1등씩 상향 조정하여 18등급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4-9. 국민연금 가입 기간별 순현재가치(NPV)

단위: 천 원

표준소득등급	10년	15년	20년	30년
5등급	18,396	23,262	26,540	17,574
10등급	19,024	23,994	29,860	25,010
15등급	19,927	28,979	32,757	36,853
20등급	20,541	25,007	31,104	29,249

주: 평균수명 80세, 이자율 3%

고려할 경우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준소득등급이 15등급이고, 납입기간이 15년인 경우 전체적으로 28,979천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표준소득등급이 20등급이고, 납입기간이 15년이면 25,007천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20등급의 경우가 15등급보다 더 적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정부의 보조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NPV > 0$ 이면 반드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즉,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농가는 항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실제 농가의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보면, 정부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실적이 낮다. 이는 농가가 국민연금 가입여력이 없거나 홍보부족으로 농가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이나 홍보를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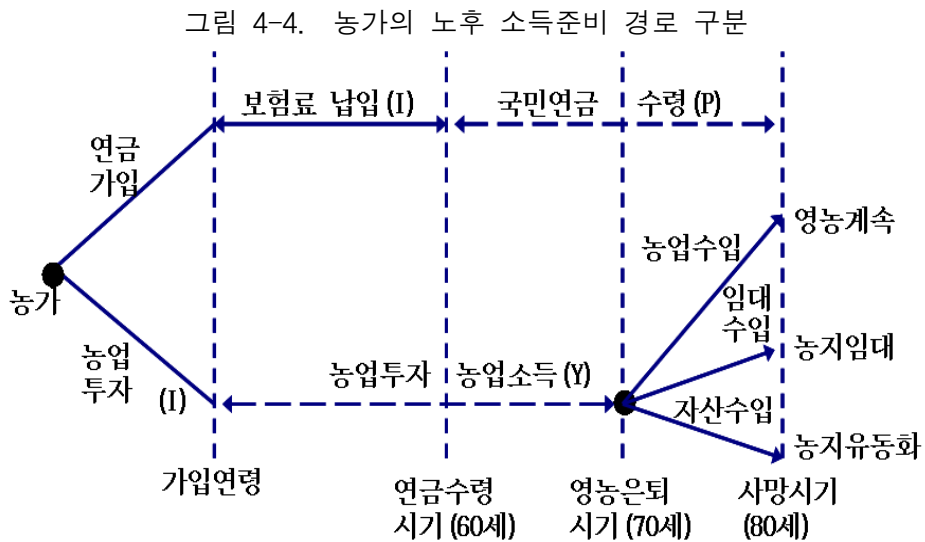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신의 소득수준보다 낮은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어떤 이유로 농가가 국민연금에 적게 가입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농가가 노후 소득준비를 하는 경로 하나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연금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만큼을 농업에 투자하여 농업소득을 얻고, 자산을 증식시켜 노후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사적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보

다 더 유리하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 충분히 노후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가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정하고, 국민연금의 대체방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농가의 농업투자로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농가가 농업 투자를 선택하게 되면 농가는 투자 시점부터 농업소득을 얻게 되고, 영농 은퇴시기가 되면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농지임대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정책적으로 역모기지론이 도입되면 이 농지를 유동화하여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형태의 노후 소득준비방안이다.

농가는 노후 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농업투자를 확대하는 것 등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그림 4-4>에서와 같이 농가가 국민연금 가입을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연금에 가입할 것인가²⁹, 아니면



²⁹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청장년 농업인들이 노후 준비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투자를 확대할 것인가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투자선택의 문제로 국민연금 가입수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두 경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농가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설명하여 줄 것이다. 만일 농업투자가 연금가입보다 유리하다면 농가는 연금가입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정부보조지원까지 고려한 연금 납입금에 해당하는 연금을 사망시기(분석편의를 위해 80세를 가정)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자신의 납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정부보조분은 제외)을 농업부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규모에 해당하는 농업소득과 농지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았다. 농업투자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한 이유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함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40세와 50세 농가가 노후 준비를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농업투자에 대한 소득을 농지에 대한 보수인 농지임차료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경우 ①)와 농지 면적당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경우 ②)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농가가 농업 이외에 노동활용의 대안이 없는 부분실업의 상태에 있다면, 농가는 농지투자로 자신의 잠재노동력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농업투자에 대한 편익으로는 토지용역비만이 아니라 모든 경영비를 뺀 추가적인 농업소득을 얻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보수분 이외에도 노동수입의 확대도 농업투자의 효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후자(경우 ②)에 해당된다. 반면에 다른 노동활용기회가 있다면 투자의 편익은 순수한 토지보수분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추가하였다. 연금관련 자료들은 현재기준에서 실질적인 수준을 고려한 것이므로 시간의 할인률만 고려하여 실질금리 3%를 활용하여 현재가치화를 실시하였다. 농업수익은 향후 변동이 없다고 보고, 임대수입은 농가경제조사결과에 나온 평균치를 활용하였다. 농업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외에 자산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가치 상승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때 농지 가격은 매년 3%씩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70세 이후에는 영농에서

표 4-10. 청장년 농가의 노후 소득준비 대안별 시뮬레이션

단위: 천 원

	국민연금 가입			농업투자			
	비용	수익	손익	비용 농업투자	수익		손익
	연금 보험료	연금 수령액			농지임대 수익	자산가치 증가	
50세	21,635	43,450	21,815	21,635	8,146 24,486	28,909	15,421 31,761
40세	37,733	68,841	31,108	37,733	16,586 55,669	55,353	34,388 73,471

가정: 실질이자율 3%, 농가 평균 농업소득 월 250만 원, 국민연금 등급 38등급,
 단위면적당 농지수익: 920/m², 단위면적당 농지가격: 13,500/m²,
 평균임대료수입: 250/m², 기대수명 80세, 농지가격 상승률 3%

은퇴한 것으로 가정하여 농업소득이 아니라 농지임대수입만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 <표 4-10>이다. 50세 농가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21,815천 원 정도 이익을 얻게 되지만, 농업투자를 할 경우 농지임대 소득으로 8,146천 원의 수입을 얻고, 농업소득을 고려할 경우 총 24,486천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농지가격 상승에 의한 자산가치 증식의 이익은 28,909천 원이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농지임대소득만을 고려할 경우(경우 ①)에는 총 15,421천 원의 이익을 보고, 농업수입을 고려할 경우(경우 ②)에는 총 31,761천 원의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국민연금가입 NPV와 비교하여 보면, 50세 농가가 농지임대수익만을 농업투자 편익으로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농업소득으로 확대하면 농업투자를 더 선호하게 된다.

한편 40세 농가의 경우를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1,108천 원의 이익을 얻고, 농업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수입만 고려한 (경

우 ①)에서는 34,388천 원의 이익을 얻고, 농업소득으로 확대한 (경우 ②)에서는 73,471천 원의 이익을 얻는다. 젊은 농가의 경우에는 임대소득만을 고려하여도 국민연금 가입보다는 농업투자를 더 선호한다. 농업소득이 실현되므로 농업투자를 더 선호하게 된다. 현지조사에서도 젊은 농가일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이를 농업생산에 투자하여 농업규모를 확대하고, 사업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농업투자에 대한 손익을 보면 농업투자에 따른 농업소득 획득 이외에도 자산가치의 상승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농업투자를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농업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도 투자한 농지의 자산가치 변화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50세 농가가 노후에 실제로는 농업소득만 실현한다면 농업소득이 24,486천 원이므로 연금수령액보다 낮아 소득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0세 농가도 농업소득만 고려한다면 55,669천 원의 이익을 얻어 연금수령보다 낮아지게 된다.

농지의 자산가치 증식은 편익이지만 자산으로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노후 소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농지는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전통의식이 강하면 노후 소득문제는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한 농지의 자산가치를 노후에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의 노후 소득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의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농업생산에 따른 농업소득을 고려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보다는 농업투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면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50세의 농가에서와 같이 농지의 임대수입만 고려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농업투자에 대한 노후 소득준비는 국민연금보다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투자의 보수를 농지임차료로 고려할 경우 농가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농업투자의 보수를 면적당 농업소득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농업투자가 더 유리하게 된다.

둘째, 젊은 농가일수록 영농기간이 더 장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농업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된다. 실제 현지 농가조사에서도 젊은 농가일수록 농업투자를 더 선호하였다.

셋째, 농지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상속하는 경우) 농업투자 수익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농가의 노후 준비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농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농업투자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준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농업투자가 유리하다 할지라도 농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안전한 노후 소득준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로 농업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농가는 위험을 고려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농업투자가 더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농업수익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4. 실물옵션(real option) 모델에 의한 비교정태분석³⁰

앞절의 노후 소득준비 경로별 비교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명확히 비교하여 보여주는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관련 변수들이 변화하였을 경우에 노후 준비 방안에 대한 선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비교정태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물옵션모델(real option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전적인 투자이론에서는 투자수익의 현재가치(NPV)가 0 이상이면, 즉 $NPV > 0$ 이면, 항상 그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보면, 국민연금 수익의 현재가치가 항상 0 이상이므로 가입하여야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농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계속 연금을 불입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다른 부문의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투자의 비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가 비가역적이고, 투자수익이 불확실한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실물옵션모델이다.

먼저 농업수입은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매년 일정한 추세로 감소하지만 수급여건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농업수익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동한다고 설정하였다.

$$dp = -\alpha p dt + \sigma p dw ,$$

$$\text{단, } E(dw) = 0, \text{ var}(dw) = dt$$

여기서 p 는 농업수익, α 는 농업수익의 추세변동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하였다. σ 는 농업수익 변동의 불확실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농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이므로 농업수익을 극대화하

³⁰ 박호정·황의식(2007), 미발표 논문을 재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은 앞 절의 상황을 수리적으로 모형화한 것이다.

고자 한다. 즉, 다음 식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농가는 기존 농업규모 S 에 더해 추가적으로 h 만큼의 농업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비용으로 c 만큼 부담한다.

$$\text{즉, } V^0(p) = E \int_0^\infty (pQ(S) - ch)e^{-rt} dt \quad \text{단, } Q(S) = mrs$$

이 목적함수에 대해 Ito의 lemma를 이용하여 최적화의 조건을 구하여 보면 다음 식과 같다.³¹

$$V^0 = \frac{mpS}{r+\alpha} + \frac{h(mpr - c(r+\alpha)^2)}{r(r+\alpha)^2} + pe^{\frac{(r+\alpha)S}{h}} + A(pe^{kS})^\phi \quad \text{식(1)}$$

이제 새로이 농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자.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T_1 기까지 가입하고, 이후 T_2 기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젊은 농가일수록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므로 T_1 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농가의 목적함수는 다음 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V^1(p) = E \int_0^\infty pmSe^{-rt} dt - \int_0^{T_1} (1-\lambda)ae^{-rt} dt + \int_{T_1}^{T_2} \delta e^{-rt} dt$$

여기에서 a 는 국민연금보험료이고, λ 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보조비율로 농가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lambda)a$ 가 된다. 그리고 δ 는 국민연금 불입액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최적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V^1(p) = \frac{pmS}{r+\alpha} - \frac{h(mpr - c(r+\alpha)^2)}{r(r+\alpha)^2} - \frac{(1-\lambda)a}{r}(1 - e^{-rT_1}) + \frac{\delta a}{r}(e^{-rT_1} - e^{-rT_2}) \quad \text{식(2)}$$

³¹ 구체적인 수식의 도출은 <부록3>을 참조

식 (1)과 식 (2)에 대해 두 극대화 조건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두 가지 경계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같은 무차별하다는 조건이다. 즉,

$$V^0(p) = V^1(p) - I$$

$$V_p^0 = V_p^1(p)$$

농업투자의 옵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최적조건은 다음 식(3)을 만족하는 것이다.

$$p^* = \left(\Phi(\lambda, \delta, T_1, T_2) - I + \frac{c\bar{h}}{r} \right) \left(\frac{\phi}{\phi - 1} \right) \left(\frac{hm}{(r + \alpha)^2} + e^{\frac{(r + \alpha)S}{h}} \right)^{-1}$$

..... 식(3)

여기에서 p^* 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농업 수익률의 임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농업수익이 이 임계치보다 낮아진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3)을 활용하여 비교정태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1) 농업수익성 하락율(-a)이 확대되면 연금가입이 더 유리해진다.
- 2) 정부보조(λ)의 비율이 확대되면 연금가입이 더 유리해진다.
- 3) 젊은 농가(T₁ 증가)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정부보조 지원(λ)과 연금수령비율(δ)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예를 나타낸 것이 <그림 4-5>이다.

여기에 적용한 변수값은 $h=0.01$; $c=10$; $I=0.1$; $r=0.05$; $S=2$ $m=0.1$; $\alpha=0.05$; $\phi=1.1$; $T_1=10$; $T_2=25$; $a=1$; 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보조비율(λ)이 증가할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농업수익의 임계치 p^* 가 더 커진다. 즉, λ가 커지면 p^* 가 커져야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수익을 임계치가 커지고 농업수익이 높아야 농업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비율이 증가하면 즉, 동일한 가입에 대

그림 4-5. 정부의 국민연금 보조비율과 수령비율의 변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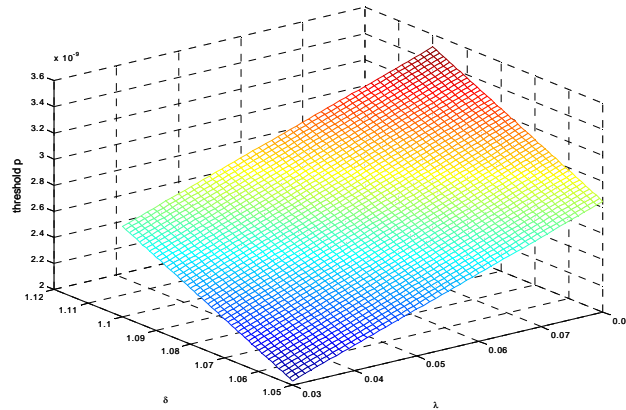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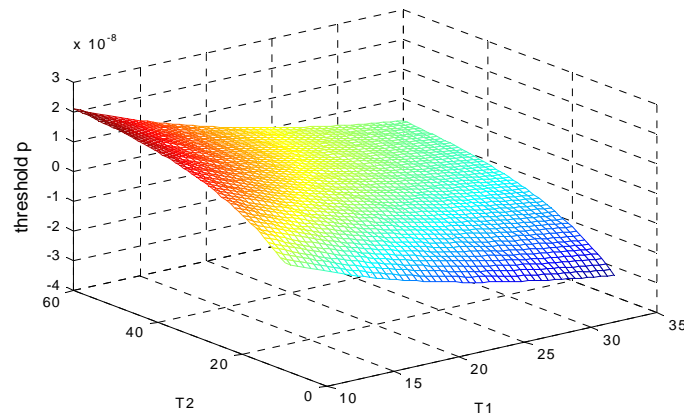


그림 4-6. 국민연금 가입연령(T_1)과 연금수령기간(T_2)의 영향



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농업 수익성이 높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시점과 수령기간의 변화에 따라 농업수익의 임계치도 변한다.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4-6>이다. <그림 4-6>에서 보듯이 젊은 농가일수록 즉, T_1 이 증가할수록 농업수익율의 임계치가 낮아지고 국민연금 가입보다 농업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또 수령기간이 증가할수록 즉, T_2 가 증가할수록 농업수익율이 높아야만 농업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1.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의 기본방향

1.1. 노후 소득보장체계

최근에는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노후 소득보장을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다양한 소득보장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안은 국가, 기업, 개인과 사회가 분담하는 다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는 공적연금(국민연금)을 통해 기초보장을 제공하고, 기업은 기업연금(또는 퇴직금)으로 추가보장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 역모기지론, 자산운용, 저축 등을 활용하여 여유소득을 확보하며, 사회적으로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정착단계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그림 5-1>. 선진국과 비슷하게 공적연금이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고, 기업연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도입되었으며, 역모기지론도 부분적이거나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 상황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긴급지원이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³²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될 예정이다.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은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어

그림 5-1.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체계

사회적 소득안전망		관련 제도	사회적 위험	대상 계층
0차 : 민간		근로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역모기지	소득상실	모든 국민 근로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
1차 : 예방 (사회보험)		국민연금	노령	모든 국민
		공무원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군인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2차 : 기초 생활 보장	보완장치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각종대부 사업	실업	실직자, 저소득층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빈곤	저소득계층
3차 : 긴급구호		긴급지원	돌발적 위기상황	모든 국민

자료: 조홍식. 2007.7.23. “농촌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전문가토론회 토론 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³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득보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방향은 다층체계³⁴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적·사적 부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민간(개인, 시장)의 역할 확대, 생산적 노후 보장체계 구축, 세대 간 형평성 확보(후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 지양) 및 세대별·계층별·성별 특성에 따른 전략 강구 등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오래전부터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³² 2009년부터는 65세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³³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은 <부록1>을 참조.

³⁴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다층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김원섭 등 2006 등).

사례에서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³⁵. 첫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한 지가 오래되어 공적연금이 고령농업인들의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농업인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과 농업자 연금제도의 이중구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연금제도를 후계자 확보나 농지 이양 등 농업정책의 효과 증대와 연계하고 있다. 넷째,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외형상으로는 선진국과 비슷한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편성이 부족한 것이 이들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1.2.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의 기본방향

장차 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 소득보장체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보장성, 수익성 등에서 가장 우월하며, 소득재분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여 노후 가계비를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된다.

다음으로는 농업인의 특성과 유형에 맞게 스스로 노후 소득대책을 마련하도록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미비되어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앞으로 농업정책 방향이 농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특성에 맞는 소득보장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고, 조기에 경영이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차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³⁵ 일본과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내용은 <부록2>에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도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어 영농에서 은퇴하게 되면, 젊은 시절에 마련해 둔 다양한 소득원에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농업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의 수혜대상에서마저 제외되어 있어 농촌 빈곤이 확대되고, 도농 간 노령인구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가 확대되면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노인들이 빈곤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도입되어 정착됨에 따라 노인은 이미 빈곤계층이 아니며, 다른 연령대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³⁶. 우리나라도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장의 과제를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농촌 빈곤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기를 놓친 고령농업인들의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과제

2.1. 국민연금의 가입률 제고

2.1.1.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및 홍보 강화

국민연금은 국민이 고령,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제도이다. 모

³⁶ 노후 소득 구성과 관련한 외국 연구들의 공통점은 지난 몇십 년간 퇴직 이후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주로 공·사연금의 발전과 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서구에서도 이전에는 “노년기=빈곤”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였으나,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발달로 노년기의 빈곤위험은 다른 집단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김수완 등 2005).

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농업인들에게는 강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미흡하다.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원천징수로 강제가입이 가능하나 농어업인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워 자발적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³⁷.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득대책 외에 국가 차원에서 기본적인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낮은 소득수준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득이 낮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 준비 수단이 될 수 있다³⁸. 개인적으로 마련한 수단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차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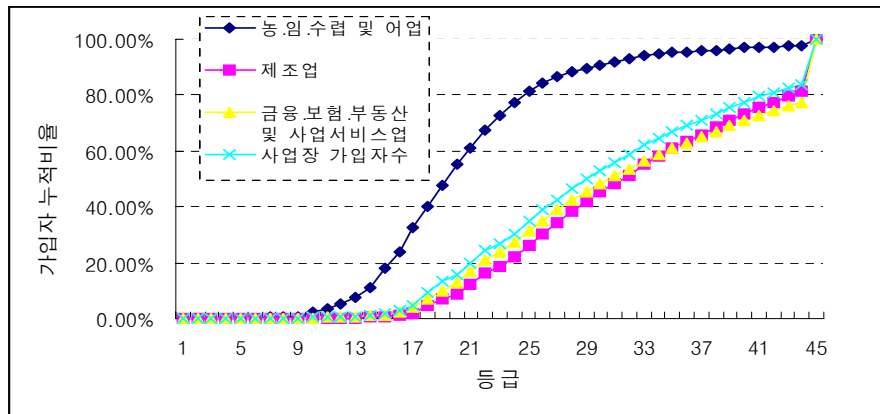
금년도에 국민연금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부담은 현행대로 하고 적게 받는’ 형태로 체계가 변경된다. 그렇더라도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종전과 같은 노후 소득 수준을 확보하려면 연금보험료 부담금액을 더 상향조정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청장년 농업인이 보다 국민연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농어업인들에게는 농어업인들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농업인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입한 경우에도 낮은 소득등급에 분포되어 있다<그림 5-2>. 앞으로 수령할 연금액 규모가 작아 노후 소득대책으로서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³⁷ 건강보험은 당장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가입이 용이하나, 국민연금은 실제로 가입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³⁸ 국민연금법 개정(2007.7.23)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급여의 일정금액(12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되었다.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궁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5-2. 직종별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가입자 누적 비율



자료: 2006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에서 정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이해 부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 노후 준비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노후 준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국민연금 등 조기에 노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는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가입과 보험료 징수 및 연금 지급 등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강제가입이 가능하나 실제로 공단에서 강제력을 발휘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농업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가입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각종 농업인 교육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매년초에 실시되는 동계 영농교육이라든지 하계 영농교육, 그밖에 다수의 농업인이 모이는 기회를 활용하여 노후소득 준비의 중요성과 국민연금의 유리한 점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2.1.2. 배우자 가입 권장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농업경영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여성농업인들도 국민연금에 가입(임의)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농업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노후 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349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8명(2.3%)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별다른 대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여성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여성농업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들은 영농의 주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의무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임의가입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은 의무가입대상자인지 임의가입대상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2.1.3. 적정 수준의 연금보험료 납부 유도

국민연금보험료는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농업인들도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청장년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최저위 소득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 이하에 가입한 농업인이 22.9%나 차지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월 7만 원 정도의 연금보험료 수준으로는 노후의 연금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게 될 것이다.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대다수가 마지 못해 가입했으나 연금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벼운 부담은 당장은 심리적으로 편안할지 모르지만 장차 연금 수급을 받게 되는 시점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아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 수급시기가 20~3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능한 한 많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정도에 따라 장차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대상은 2007년도 최저생계비 수준(1인 가구, 2인 가구)으로 하였다. 우선 가입기간이 15년인 경우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32등급에 해당하는 167,000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15년의 가입기간으로는

표 5-1.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최저생계비 충족 표준소득등급

단위: 원

가입기간		등급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예상 연금 월액
15년	1인 기준	32	1,860,000	167,400	378,330
	2인 기준	-	-	-	-
20년	1인 기준	21	920,000	82,800	380,830
	2인 기준	39	2,670,000	240,300	643,330
30년	1인 기준	11	400,000	36,000	400,000
	2인 기준	25	1,210,000	108,900	636,500
40년	1인 기준	9	340,000	30,600	340,000
	2인 기준	17	670,000	60,300	670,000

주: 1. 2007년도 최저생계비(현금급여 기준)는 1인가구 372,978원, 2인가구 628,370원을 적용

2. 이 시산은 국민연금이 개정되기 전의 조건들을 전제로 한 것이며,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 기간과 보험료 수준은 확대되어야 할 것임

최고등급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없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40년이라면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동안 9등급의 보험료(30,600원)를 납부하면 된다. 2인 기준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7등급의 보험료(60,300원)를 납부하면 된다. <표 5-1>을 보면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 표준소득월액과 예상 연금 월액이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국민연금체계가 40년 가입 시 본인 소득의 100%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1.4. 보험료 지원 수준 상향 조정

직장인들은 각종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며, 개인연금 가입 시에도 근로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어 사적 개인연금 가입이 큰 유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대부분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아 세액공제의 효과가 없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매우 낮다.

농업인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의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 가입한 농업인의 가입을 유도하여 노후 소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저소득 농어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한다. 농업인 실태조사와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득이 낮은 농가일수록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가입 여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낮은 소득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고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은 줄이거나 배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2.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2007년 7월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³⁹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대출 상품이다.

대상자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1세대당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만(6억 원 이하) 해당된다. 정부가 보조한 만큼 저소득 고령가구를 지원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연금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대상자가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모기지론과는 다르다. 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일정 보험료를 지불하면 주택가격의 변동, 장수에 따른 주택가치 초과 연금수령 등의 위험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과 같이 종신형으로 지원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주택금융공사가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주택 가격과 월 지급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 5-2>이다.

표 5-2. 주택연금 월 지급액(2007년)

단위: 만 원

연령 \ 주택가격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6억 원
65세	28	57	86	115	144	172
70세	35	70	106	141	177	201
75세	44	88	133	177	212	212
80세	56	112	168	225	231	231
85세	72	145	218	262	262	262
90세	97	194	291	326	326	326

³⁹ 1995년부터 민간 금융기관(국민, 조흥, 삼성생명)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처음 도입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004년 5월 일부 금융기관이 다시 역모기지 상품을 도입하였으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신계약에 기초한 상품(종신형 역모기지)이 아니라 주요 대상이 40대 및 50대이며, 대출기간이 1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고령자의 노후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 역모기지론은 주택이 고가인 도시지역 고령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⁴⁰ 그러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낮거나 무허가 주택이 많은 농촌의 고령자들이 활용하는 데는 유인이 없다. 농가의 주택이라는 것의 시장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촌은 주택역모기지론의 소외지역이 되고 있다.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은 주택이라기보다는 농지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지를 역모기지론에 포함하지 않으면 농가는 아무런 유인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농지는 다른 자산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산수단이면서 동시에 자산이고, 또 농지법에 의해 소유와 이용이 규제되어 거래시장이 잘 발달하여 있지 않다. 다른 토지와 달리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노인, 특히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형 역모기지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농지은행이 활성화되고 고령농업인들이나 자녀들의 농지상속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역모기지론이 농촌지역에서 정착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농지가격 변동, 소유이용규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3. 개인연금의 활용 제고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이중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3층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도 가입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추가적인 노후 소득보장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

⁴⁰ 역모기지가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확보 대책으로 유용하다는 연구는 다수 있다(여운경 2006; 오영수 등 2006 등).

로 고려하여 볼 수 있는 것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농가의 경우에는 개인연금 가입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면세 대상인 농업인들에게는 개인연금 가입에서 세액공제 유인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비농업인보다도 개인연금에 의한 노후 준비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이 개인연금을 노후 보장 보완수단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향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정부지원을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농업인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이자를 이외에 농어가목돈마련장기저축의 지원과 같이 일정 부분 이자율을 보조해 주는 방안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또한 농업소득세 등의 개편에서 개인연금의 공제범위를 확대하여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2.4. 노후 근로 기회 제공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구비되지 않았지만, 이미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된 선진국들의 경우 공적, 사적 연금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퇴직 연령 후의 근로소득을 중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지나친 복지로 재정악화가 가속화되어 복지지출을 억제하면서 사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년 연장⁴¹, 은퇴지연, 점진적 은퇴제도

⁴¹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및 독일 등은 복지재정의 적자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동아일보

등에 대한 검토가 그러한 시도들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확보하여 생활하는 것이 복지연금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보람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선진국들과 같은 문제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 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경험들을 눈여겨 봄으로써 선진국들과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도 얼마 전부터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보람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농업의 경우 건강이 허락하면 영농은퇴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 농업인들은 적정 은퇴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농업인이라도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이라도 소규모 영농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촌지역에서의 인력 확보 측면에서 고령농업인들이 영농에서 은퇴 후에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확보하여 사회 참여와 함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5. 경영규모 확대와 적극적 영농활동 여건 조성

미래의 고령농업인이 될 현재의 청장년 농업인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응할 것은 최선의 경제활동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여 확대재생산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다. 농업생산의 수익을 축적하여 미래 소비를 준비하는 것이다. 경영형태나 규모 등이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영농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7.11.17자).

농가가 자신의 노력으로 농업기반을 확대하여 미래 자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업생산의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

1. 요약

산업화·도시화로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 사회보장체계가 덜 구비되어 있어 선진국에 비해 노후소득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노후 소득 준비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추진하였을 때 효과가 더 높으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후 소득 준비에 소홀히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노후 소득준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노후 준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농업인이 노후소득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현재 고령 농가의 소득부족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61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가소득을 분석하였다. 고령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24,655천 원으로 농가전체의 평균소득(32,303천 원)의 76.4% 수준이다. 소득원별로는 농업소득이 39.1%, 농지임대수입이 1.2%, 이전소득이 22.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노령인구와 비교하면 농업인은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후 소득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영주 연령별 소득원 구성을 보면, 70세 이전의 농가에서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42%로 매우 높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비중은 4.5%로 낮다. 반면, 76세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 비중은 29.0%에 불과

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13.6%로 매우 높다. 고령농가일수록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 노후 연금이 중요한 소득원이 됨을 알 수 있다.

고령농가의 소득부족 문제를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하나는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다. 다른 하나는 61~65세 사이 농가의 가계비 지출의 65% 수준을 노후 소득 문제가 발생하는 임계치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농가의 경우 61~65세를 은퇴직전의 연령으로 본 것이다.

먼저 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은 34.8%이었다. 또한, 고령농가는 많은 보건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그만큼 가계비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비를 제외하였을 때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은 34.8%에서 27.9%로 6.9%가 감소하였다. 저소득 고령농가층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원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에 적정 노후 소득의 절대적 기준으로 61~65세 농가 가계비 지출(31,133천 원)의 65% 수준인 20,236천 원(월 169만 원)을 설정하였다. 이 적정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은 51.5%에 이른다. 노후 적정소득을 월 169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추었을 때 농가소득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은 51.5%에서 44.1%로 감소한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자산을 자신의 노후 소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농가자산 중 토지자산에서 현재 부채를 뺀 순토지자산만을 고려하였다. 고령농가 평균 순토지자산은 호당평균 1억 5,336만 원이었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순토지자산을 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동화할 경우 순토지자산은 80세까지 연간 4,498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농가소득에 다 역모기지론으로 획득한 자산소득까지 포함한 고령농가의 전체소득은 평균 29,153천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의 도입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은 34.8%에서 24.8%로 약 10%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 소득대책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500명의 농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66명으로 53.3%를 차지

했다. 대체로 40대 연령층, 대졸 이상 학력층, 5,000만 원 이상의 소득규모 층 및 경지면적 10,000평 이상의 농가의 가입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가 3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별다른 이유 없음” 20.1%,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서” 19.7%, “잘 알지 못해서” 9.8%의 순이다.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에 대하여는 젊고, 학력이 높고,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국민연금 불신’과 ‘별다른 이유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제고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234명 중에서 금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단지 10명(4.3%)에 불과해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의 보험료 수준이 높지 않은데, 농업인들이 자신의 부담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통해 40, 50대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보아도 낮은 표준 소득등급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3.4%에 불과하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영주 가운데 거의 대부분(94.3%)이 앞으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의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 농업인 500명 중 60명만(12.0%)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개인연금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생각은 하였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이 다수(53.0%)이며, 생활에 급급하여 노후 준비의 겨를이 없는 농업인도 23.2%에 달하였다.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40, 50대 농업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고소득 농가가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로는 ‘건강’ 50.0%, ‘생활비 마련’ 26.2%, ‘의료비’ 14.4%의 순이었다. 다수의 농업인들은 노후에 생활비 확보보다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본인이 주로 하고 국가가 일부 보조”(36.8%),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26.2%), “본인이 하되 가족이 지원”(22.2%), “국가의 사회보장제도”(14.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인의 노후 준비는 본인이 주가 되어 하되, 국가나 가족이 일부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차 고령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 소득보장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농업인의 특성과 유형에 맞게 스스로 노후 소득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래의 고령농업인이 될 현재의 청장년 농업인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선의 경제활동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여 확대재생산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한다. 청장년 농업인은 농업투자의 수익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노후 준비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투자 효율성이 불규칙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안전한 노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 낮은 가입율 및 낮은 등급의 표준소득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여성농업인들도 국민연금에 가입(임의)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농업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노후 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농업인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의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조정이 중요하다.

셋째, 농촌노인, 특히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소득화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개발하여 확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농지은행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농업인들이 개인연금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가는 세제혜택이 없어 근로자에 비해 개인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매우 낮다.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향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다섯째, 노후 소득준비는 국민연금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혜택으로 가계비가 축소되면 그만큼 농가의 노후 필요소득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농어촌의 고령농가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등도 효과 높은 정책이 될 것이다.

여섯째, 고령농업인이라도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이라도 소규모 영농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결론

산업화·도시화로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누구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 노인들은 주 소득원이 공적 이전소득이다. 그러나 아직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사적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다.

61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소득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이 주종을 이루며,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34.8%나 된다. 대부분의 고령농업인들은 노후 소득 대책이 충분하지 못해 어렵게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도 낮아 향후 연금에 의한 노후 소득의 도농간 격차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농업인도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확보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장년 농업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공적 소득보장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낮은 수준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개인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젊은 농가일수록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청장년 농업인들은 노후 소득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장년 농업인들은 노후 대책은 농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노후준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령농업인들이 어렵게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장년 농업인도 노후 소득대책이 미흡하다는 분석 결과와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장년 농업인들도 노후 준비에 대하여 미리미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장년 농업인은 농업투자의 수익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노후 준비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투자 효율성이 불규칙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다 안전한 노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책의 기본방향은 우선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보장성과 수익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농업인 각자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인이 개인연금 등에 가입하거나 역모기지론을 활용하여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 결과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성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하여 실태분석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즉 노후 소득부족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농업인의 소득문제를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그 결과가 농업인의 노후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은 이후의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부록 1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

가. 긴급지원

- 2006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써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당장의 생계나 치료를 하기 어려운 자가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지원함.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등이 있음.
- 대도시에 비해서 농촌에서는 그 유용성이 떨어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곤궁한 자들에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 지원을 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근거법이었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된 것임.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지원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 시 농어촌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다. 경로연금

-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폐지하고, 1997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1998년 7월부터 시행하

고 있는 연금임.

- 1998년 국민연금이 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전국민이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월 4.5~5만 원(80세 이상은 월 5만 원, 65~79세는 월 4.5만 원), 저소득층 노인은 월 3.5만 원임.
- 지급 대상자 수와 연금액이 너무 작음.
-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면 폐지됨.

라. 기초노령연금

- 현재의 노인들의 빈곤 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2007.4.25에 제정함.
- 전체 노인의 60%(2009년부터 70%)를 지급대상 목표로 설정함.
 -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을 대상
-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의 5% 수준을 목표로 함.
 - 2007년말 현재 84천원/월/인으로 추산됨.
- 소요비용은 지자체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국가가 부담함.
- 연금지급 수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과 지자체의 재원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임.
-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노인교통수당이 2009년부터 전면 폐지되고,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도 급여수준의 인상이나 신설이 금지될 예정임.

부표 2-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구분	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만 있는 경우	소득·재산 모두 있는 경우
노인 단독 가구	월 40만 원 이하	9,600만 원 이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환산액과 실제소득 합산 → 월 40만 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64만 원 이하	1억 5,360만 원 이하	환산액과 실 소득 합산액이 월 64만 원 이하

주: 1. 재산은 공시가격 기준. 소득 환산시 연 5%로 할인
 2. 월 소득 환산액 = 총 재산 × 0.05 ÷ 12(개월)

부표 2-2. 기초노령연금 수급 내용

노인 단독 가구		노인 부부 가구	
월 소득	연금액	월 소득	연금액
32만 원 미만	8.4만 원	52만 원 미만	13.4만 원
32~34만 원 미만	8	52~56만 원 미만	12
34~36만 원 미만	6	56~60만 원 미만	8
36~38만 원 미만	4	60~64만 원 미만	4
38~40만 원	2	-	-

주: 1. 노인 부부 중 1명만 수령할 경우에는 단독 가구 기준에 준함.
 2. 월 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까지 포함

마.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고령은퇴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쌀전업농의 규모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일시불 지급방식이던 것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함.

- 농지를 매도 또는 장기임대하는 경우에 지급함.
- 매도시 290만 원/ha(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 241천 원 지급)
임대시 298만 원/ha(1회 지급)
- 경영이양 직불제의 보조금 지급단가 수준이 위탁영농 시의 소득 수준보다 낮으므로 경영이양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함.⁴²

바.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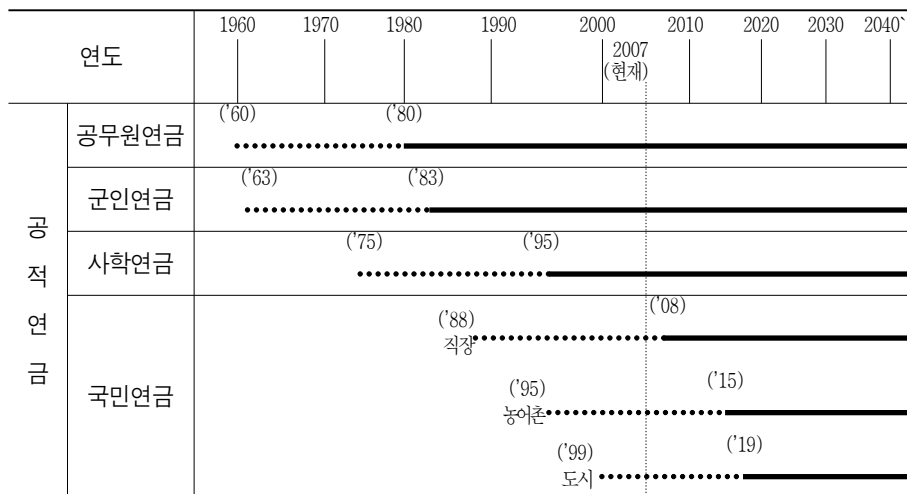
- 국민의 고령,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강제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음.
- 2008년부터는 ‘부담은 현행대로 하고 적게 받는’ 형태로 체계가 변경됨.
 - 종전과 같은 노후 소득 수준을 확보하려면 연금보험료 부담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함.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피용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1/2을 부담하지만, 자영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다만,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농어업인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입한 경우에도 낮은 소득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앞으로 수령할 연금액 규모가 작아 노후 소득 대책으로서는 미흡함.
 -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원천징수로 강제가입이 가능하나 농어업인은 가입을 강제하기가 어려움.

⁴² 김정호 등(2007)은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령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음.

○ 공적연금의 추진 과정

-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여하는 공적 소득보장 제도에는 국민연금, 공무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음.
 -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이외의 것들은 특수직종의 종사자들만을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함.
- 특수직역연금은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이미 많은 연금 수급자가 나오고 있음.

부도 2-1. 공적연금의 추이



아. 주택역모기지론 제도

- 2007년 7월 11일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론이 시행되고 있음.
-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 상품임.
- 대상자 :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118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

- 대상주택 : 1세대당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만 해당(6억 원 이하)
-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함.
- 도시 고령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시지가가 낮거나 무허가 주택이 많은 농촌 고령자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고령농업인들의 주요 자산은 주택보다는 농지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음.

부표 2-3. 주택연금 월지급액(2007년 현재)

단위: 만 원

주택가격 연령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6억 원
65세	28	57	86	115	144	172
70세	35	70	106	141	177	201
75세	44	88	133	177	212	212
80세	56	112	168	225	231	231
85세	72	145	218	262	262	262
90세	97	194	291	326	326	326

부록 2

외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가. 일본

1) 공적연금제도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금으로 구성됨.
- 국민연금은 피용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함.
 - 국민연금은 1959년 4월에 법률이 제정되어 복지연금(1959.1)과 각출제연금(1961.4)이 시작되었음.
 - 1985년 법 개정으로 피용자 및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강제가입하게 되어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제로 발전하였음. 제도 발족 당시 이미 일정한 연령에 달한 자에게는 무각출로 전액 국고부담에 의한 노령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노령기초연금은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65세부터 지급됨. 40년 가입 시 수급하는 완전노령기초연금의 수준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20% 수준이며, 이는 대략 최저생계비에 해당됨.
- 농업경영이양연금은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전에 경영을 이양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65세 이전에 경영을 이양한 자가 수급자격이 있음.
 - 경영이양연금은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경영이양자가 원하는 시기부터 지급됨.
 - 가산형과 기본형으로 구분됨.
 - 영농후계자에게 경영승계를 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연금이 지급되어 농업 후계자 확보에도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

- 농업자노령연금은 경영이양을 하지 않은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경영이양을 한 농가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함.
 - 경영이양연금의 1/2정도임.

2) 생활보호제도

- 생활보호제도는 스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1950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음.
-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며, 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요구)에 따라 현물급부와 현금급부를 실시함.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보호비율이 매우 낮고 (1% 정도임),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음.
 -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중의 46% 정도가 고령자 세대이며, 의료보조비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독일의 사례

1) 공적연금

-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는 노동자·직원·광부연금제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공적 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험료 부담 및 급여체계는 거의 동일함.
 - 독일 노인층의 소득원천에서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임.
- 독일은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경기 침체, 인구구조의 고령화, EU 통화의 통합 등으로 연금재정이 압박되어 여러 차례 지출억제정책을 추진하는 등 재정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음.
- 취약계층을 위한 크레딧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실업 등에 대

한 ‘기여인정제도’를 도입하였음.

- 농민노령부조법은 1957년에 처음 제정되어 농업경영자와 그 가족 종사자에게 적용되었으며, 1994년에 ‘농민사회보험개혁법’이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농민노령부조법은 이 법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민사회보험개혁법에 의해 배우자는 가족종사원이 아니라 별도의 농업경영자로서 가입토록 하였고, 농민에 대한 연금급여 산정방식을 정액방식에서 다른 공적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농민노령부조의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야 함.
- 문제점은 첫째, 농업조사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며 둘째, 별도의 연금제도 운영으로 연금제도를 통한 집단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2) 사회부조 및 긴급지원

-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1961년에 연방사회부조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화됨.
- 사회부조는 사회적으로 긴급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여금 없이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식비와 주거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조임.
- 노령연금만으로 생활이 되지 않는 저 연금 노인들은 대부분 사회부조에 의존함.

다.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일본과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지가 오래되어 고령농업인들의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농업인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과 농업자 연금제도의 이중구조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연금제도를 후계자 확보나 농지 이양 등 농업정책의 효과 증대와 연계하고 있음.
-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 줌.
- 우리나라도 외형상으로는 선진국과 비슷한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편성이 부족한 것이 이들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부록 3

농가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실물옵션모형⁴³

농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미래 소득확보를 위한 하나의 투자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농가는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다양한 형태의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한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투자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농가는 어떤 조건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농가의 투자활동으로는 농업생산을 위한 투자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두가지만 있는 것으로 본다.

먼저 농가가 농업생산활동으로부터 얻은 단위당 순수입(net price)을 P 라 한다. 즉, 농업생산에서 얻은 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단위당 순수입이다. 이 농업순수입은 자연적인 요인, 시장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다음 식(1)과 같이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dP = -\alpha P dt + \sigma P dw \quad (1)$$

여기에서 $E(dw) = 0$ 이고, $Var(dw) = dt$ 이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을 고려하여 농업순수익은 매년 일정한 추세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를 나타낸 것이 $-\alpha$ 이다.

농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농경지(S)의 함수이다. 그리고 농가의 농업생산 투자는 농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였다. 그러면 농업생산투자에 의해 농지는 다음 식(2)과 같이 h 만큼 증가한다.

$$\frac{dS}{dt} = h \quad (2)$$

⁴³ 박호정, 황의식(2007) 미발표논문을 재정리한 것이다.

그러면 농가의 목적함수는 농업으로부터 얻은 기대수입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제한 것이 된다. 즉,

$$E \int_0^{\infty} [pQ(S) - ch] e^{-rt} dt \quad \text{단 (1)식과 (2)식을 만족}$$

여기서 E 는 기대치 연산자이고, r 은 위험조정 할인율이고, c 는 농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농업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규모수익불변으로 설정하였다. 즉, $Q(S) = mS$ 이다. 여기서 m 은 단위당 일정한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 국민연금에 가입 이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의 농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함수를 V^0 하자. Ito의 정리를 이용하여 Hamilton-Jacobi-Bellman 함수를 구하여 보면, 다음 식(3)과 같다.

$$rV^0 = \max [pmS - ch + hV_s^0 - \alpha pV_p^0 + \frac{1}{2}\sigma^2 p^2 V_{pp}^0] \quad (3)$$

최적농지투자는 h 에 대해 1계조건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식(3)을 h 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 식을 얻게 된다. 즉, $c = V_s^0$ 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즉, $c > V_s^0$ 과 $c < V_s^0$ 이다. 단위비용이 농지의 한계가치보다 크면, $c > V_s^0$ 의 경우에 대한 최적 해는 $h = 0$ 이다. 반면에 $c < V_s^0$ 일 때는 농지에 대한 투자를 가능한 한 최대 늘리는 것이 최적이며 $h = \bar{h}$ 이다. 여기서 \bar{h} 는 최대 농지투자이다. 식(3)에서 $c = V_s^0$ 를 적용하면 식(4)와 같이 단순화 된다.

$$rV^0 = pmS - \alpha pV_p^0 + \frac{1}{2}\sigma^2 p^2 V_{pp}^0 \quad (4)$$

관심이 되는 것은 $c < V_s^0$ 인 경우이므로, 식(3)의 미분방정식에 대한 해

의 비동차해와 동차해를 각각 적용하면 다음 식(5)과 같다.

$$V^0 = \frac{mpS}{r+\alpha} - \frac{h(mpr - c(r+\alpha)^2)}{r(r+\alpha)^2} + pe^{\frac{(r+\alpha)S}{h}} + A(pe^{kS})^\phi \quad (5)$$

여기서 k 는 크기 조정변수이고, ϕ 는 다음 특성방정식의 음수 해를 나타낸 것이다. 즉, $r = \phi h - \alpha\phi + (1/2)\sigma^2\phi(\phi - 1)$ 의 특성방정식의 한 해이다. 그러면 식(5)의 우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농업투자의 순수입에서 토지구입 비용을 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우변의 네 번째 항은 국민연금 가입의 옵션가치이다.

나. 국민연금에 가입 이후

농업수익이 충분히 낮아지면 농업투자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그때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자본제약에 의해 더 이상 농업투자 즉, 농지를 구입하기가 어렵게 된다. 연금납입 만료 시점과 사망 시점을 각각 T_1 과 T_2 라 하자. 그러면 농가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즉, $t \leq T_1$ 에는 매년 a 만큼씩 연금을 불입하게 된다. 여기에서 농업인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는 비율을 $0 < \lambda < 1$ 라 한다. 농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T_1 이후 T_2 까지 매년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δa 이다.(단 $\delta > 1$ 이다) 그러면 농가 수입의 현재기대가치는 다음 식(6)과 같다.

$$V^1(p) = E \int_0^\infty pmSe^{-rt} dt - \int_0^{T_1} (1-\lambda)ae^{-rt} dt + \int_{T_1}^{T_2} \delta ae^{-rt} dt \quad (6)$$

여기서 $V^1(p)$ 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의 가치함수이다. 식(6)은 식(1)의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더 이상의 농업투자는 없는 것이 되므로 식(2)는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앞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 문제의 해를 구하면 다음 식(7)과 같다.

$$V^1(p) = \frac{pmS}{r+\alpha} - \frac{h(mpr - c(r+\alpha)^2)}{r(r+\alpha)^2} - \frac{(1-\lambda)a}{r}(1 - e^{-rT_1}) + \frac{\delta a}{r}(e^{-rT_1} - e^{-rT_2}) \quad (7)$$

여기서 표현의 단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hi(\lambda, \delta, T_1, T_2) = -\frac{(1-\lambda)a}{r}(1 - e^{-rT_1}) + \frac{\delta a}{r}(e^{-rT_1} - e^{-rT_2})$$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최적 임계치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서 결정된다. 값의 일치조건(value-matching)과 한계비용-편익 일치(smoothing-pasting) 조건이다. 즉,

$$V^0(p) = V^1(p) - I \quad (8)$$

$$V_p^0(p) = V_p^1(p) \quad (9)$$

여기서 I 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이다. 값의 일치조건 식(8)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의 값이 가입한 이후의 가치와도 같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편익과 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8)과 식(9)에 의해 p^* 와 A 의 해를 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임계치는 다음 식(10)과 같다.

$$p^* = [\Phi(\lambda, \delta, T_1, T_2) - I + c \frac{\bar{h}}{r}] \left[\frac{\phi}{\phi - 1} \right] \left[\frac{hm}{(r+\alpha)^2} + e^{\frac{(r+\alpha)S}{h}} \right]^{-1} \quad (10)$$

이 식(10)의 값이 농업수익의 임계치를 나타낸 것이다. 농업수익이 이 값보다 크면 농업에 투자하게 되고, 더 적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부록 4

농업인 노후 준비실태 조사표

농업인 노후 준비실태 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접조사원 ○○○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뢰로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농업인들의 노후준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 처리되며,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개인의 모든 신상자료는 어떠한 것도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주관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 최경환(02-3299-4348)
 조사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02-3218-9600)

※ 응답 대상자 : 본 설문지는 경영주(가구주) 또는 배우자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인적사항]

응답자 성명		전 화 번 호	() -
가구주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응답자주소	도 군(시)	면(읍)	리(동) 마을
면접조사원		면접일시	2007년 월 일
지역유형	<input type="checkbox"/> ①도시근교 <input type="checkbox"/> ②평야 <input type="checkbox"/> ③중산간 <input type="checkbox"/> ④산간	협조정도	<input type="checkbox"/> ① 상 <input type="checkbox"/> ② 중 <input type="checkbox"/> ③ 하
면접장소	<input type="checkbox"/> ① 방안이나 거실 <input type="checkbox"/> ② 영농현장	표본추출	<input type="checkbox"/> ① 본표본 <input type="checkbox"/> ② 대체표본

1. 가구연왕

문1-1. 다음은 가구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연령	만 세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무학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④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원 졸업		
배우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배우자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미혼 <input type="checkbox"/> ③ 사별 <input type="checkbox"/> ④ 이혼 <input type="checkbox"/> ⑤ 별거		
부모 동거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동거 <input type="checkbox"/> ② 비동거 <input type="checkbox"/> ③ 부(父) 동거 <input type="checkbox"/> ④ 모(母) 동거		
부모 부양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부모 부양 <input type="checkbox"/> ② 부(父) 부양 <input type="checkbox"/> ③ 모(母) 부양 <input type="checkbox"/> ④ 미부양 <input type="checkbox"/> ⑤ (미부양)생활비 일부 지원 <input type="checkbox"/> ⑥ (미부양)용돈만 제공		
주 작목	<input type="checkbox"/> ① 쌀 <input type="checkbox"/> ② 한우 <input type="checkbox"/> ③ 낙농 <input type="checkbox"/> ④ 양돈 <input type="checkbox"/> ⑤ 양계 <input type="checkbox"/> ⑥ 축산(기타) <input type="checkbox"/> ⑦ 과수 <input type="checkbox"/> ⑧ 채소(노지) <input type="checkbox"/> ⑨ 채소(시설) <input type="checkbox"/> ⑩ 특용작물 <input type="checkbox"/> ⑪ 일반밭작물(콩, 옥수수 등)		
전·겸업	<input type="checkbox"/> ① 전업농 <input type="checkbox"/> ② 겸업농 <input type="checkbox"/> ③ 부업농		
전(前) 직업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후계자 유무 문항으로)		
전(前) 직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입법·사법·행정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② 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군인 <input type="checkbox"/> ④ 공무원(기타) <input type="checkbox"/> ⑤ 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회계사 등) <input type="checkbox"/> ⑥ 회사원(사무직) <input type="checkbox"/> ⑦ 회사원(생산·기술직) <input type="checkbox"/> ⑧ 농업 외 1차 산업 <input type="checkbox"/> ⑨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⑩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⑪ 막노동 <input type="checkbox"/> ⑫ 무직 <input type="checkbox"/> ⑬ 기타(적을 것 : _____)		
취농(전업) 이유	<input type="checkbox"/> ① 정년퇴직 <input type="checkbox"/> ② 명예퇴직 <input type="checkbox"/> ③ 사업실패 <input type="checkbox"/> ④ 전업(專業) <input type="checkbox"/> ⑤ 영농승계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적을 것 : _____)		
후계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문1-2. 현재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동거 가족							가족 외	소계	비동거 가족	계	가구유형* (면접원이 기재)
조부모	부모	부부	자녀	손자녀	소계	가족 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가구유형>
 ① 부부 ② 부부 + 자녀(미혼) ③ 부부 + 자녀(기혼)
 ④ 부부 + 손자녀 ⑤ 부부 + 자녀(미혼) + 손자녀 ⑥ 부부 + 자녀(기혼) + 손자녀
 ⑦ 부모 + 부부 + 자녀 ⑧ 조부모 + 부모 + 부부 + (자녀) ⑨ 조부모 + 부부 + 자녀

2. 가구의 지출과 소득

문2-1. 선생님 댁의 2006년도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정도입니까?

월 평균 만원

문2-1-1. 그 중 소비지출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만원

소비지출은 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의류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 가구원이 한 달 동안 생활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가구집기 구입비, 기타 경조사비, 회비 등)

문2-1-2. 그 중 비소비지출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만원

비소비지출은 직접 가구원이 생활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면서 매월 지출되는 것들을 말합니다.(대출이자 상환, 비동거가구원 생활보조금, 각종 세금, 각종 사회보험료, 각종 저축, 벌과금 등)

문2-1-3.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큰 것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지출항목>
- | | | | |
|----------------|-----------|-------------|-----------|
| ① 식비 | ② 주거비 | ③ 광열수도비 | ④ 의류비 |
| ⑤ 교통통신비 | ⑥ 교육비 | ⑦ 문화생활비 | ⑧ 보건의료비 |
| ⑨ 가구집기 구입비 | ⑩ 기타 경조사비 | ⑪ 회비 | ⑫ 대출이자 상환 |
| ⑬ 비동거가구원 생활보조금 | ⑭ 각종 세금 | ⑮ 각종 사회보험료 | |
| ⑯ 각종 저축 | ⑰ 벌과금 | ⑱ 기타(_____) | |

문2-2. 현재 지출하는 생활비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문2-4로) ② 충분하다(☞문2-4로) ③ 적정하다(☞문2-4로) ④ 약간 부족하다(☞문2-3으로) ⑤ 매우 부족하다(☞문2-3으로)

문2-3. 생활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면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만원

생활비는 현재 경영주 가구가 생활하는데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쪼들리지 않고 그런대로 살아가려면 한 달에 지출해야 할 비용을 말하는 것임.

문2-4. 선생님 댁의 현재 총 저축액은 얼마나 됩니까?

약 만원

문2-5. 저축의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① 영농규모 확대(농지, 가축) | ② 교육비 마련 | ③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 |
| ④ 결혼 및 상제 준비 | ⑤ 노후 생활 준비 | ⑥ 대출(차입)금 상환 |
| ⑦ 주택 구입 | ⑧ 불의 사고 및 질병 대비 | ⑨ 기타() |

문2-6. 선생님 댁의 지난해(2006년)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득원		금액(만원)	비고
근로 소득	농업소득	연간 _____ 만원	농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뺀 순소득을 의미함.
	농업 이외 근로소득	연간 _____ 만원	비농업 분야에서의 사업 또는 취업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의미함.
자산 소득	금융소득	연간 _____ 만원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 차익 등이 포함됨.
	부동산소득	연간 _____ 만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됨.
	개인연금, 퇴직금 등 기타 자산소득	연간 _____ 만원	
공적이전소득		연간 _____ 만원	국가를 통한 소득으로 공적 연금,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호수당, 기타 정부보조금을 합한 것임.
사적이전소득		연간 _____ 만원	가족이나 친척, 친지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을 말함.
합계		연간 _____ 만원	

3. 자산연망

문3-1. 선생님 댁의 주택에 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유형*	사용년수(년)	주택 규모(평)		현재가액**(만원)		
		대지	건물	대지	건물	계

주택 유형 : 1. 단독주택(신축) 2. 단독주택(구옥) 3. 조립식주택 4. 연립(다가구)주택
 5. 아파트 6. 임대주택 7. 하우스 8. 기타()
 현재 가액 : 현재 거래되는 가격, 혹은 호가(呼價)를 기준으로 함, 지금 당장 팔려고 내놓았을 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격

※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가액의 ‘계’ 란에 임대료(전세금)를 기입함.

문3-2. 선생님 댁에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에 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모(평)	가액(만원)	비고
논			
밭			
과수원			
임야, 초지			
창고(저온저장고 등)			
축사			
시설하우스			
유리온실			
기타(무엇:)			
계			

문3-3. 선생님 댁에서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모(두수)	가액(만원)	비고
한우			
젖소			
돼지			
닭			
개			
염소			
오리			
양봉			
기타1(무엇:)			
기타2(무엇:)			
계			

문3-4. 선생님 댁에서 소유하고 계신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에 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모	가액(만원)	비고
예금·적금			
주식, 펀드			
회사채(會社債)			
기타1(무엇:)			
기타2(무엇:)			
기타3(무엇:)			
기타4(무엇:)			
계			

※ 기타에는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 자산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기입함.

4. 부채 현황

문4-1. 선생님 댁의 부채현황에 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부채잔액(만원)	부채 이유*	조건
금융기관	농협		
	농협 이외		
비금융기관			
사채			
전세금, 임대보증금			
계(契)*		기재하지 않음	
기타(무엇:)			
계			

부채 이유 : 1. 영농자금 조달 2. 자녀 교육비 3. 영농규모 확대 4. 생활비
 5. 이전 부채 상환 6. 내구재 구입 7. 관혼상제비 8. 자녀 지원
 9. 질병, 재난 10. 재테크(주식 및 부동산 투자) 11. 기타()
 계 : 갯돈을 타고 불입해야 할 갯돈의 합계액을 기입함

문6-11.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째

문6-12. 배우자는 현재 매월 얼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 국민연금보험료 : 월 원

○ 표준소득등급 : 등급

문6-13.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약간 부담된다 ③ 적정하다
 ④ 별로 부담 안된다 ⑤ 전혀 부담 안된다

문6-14.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은 적이 있다 ③ 전혀 모른다.

7. 개인연금 가입 현황

문7-1. 선생님께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십니까?(본인 직접 가입했거나, 가족이 대신

가입한 연금 모두 포함)

- ① 그렇다(☞문7-2로) ② 아니다(☞문7-6으로)

문7-2.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개인연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보험기관	상품명	가입자*	가입기간		월 납입액 (천원)	수급조건	
			가입년도	가입기간		연간수급액 (만원)	수급기간 (년)

○ 가입자 : 가구주와 배우자

문8-4.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다가 언제쯤 은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 세 정도

문8-4-1. 귀하는 언제 농업에서 은퇴하시겠습니까?

만 세 또는 년 후

문8-5.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 ① 오래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 ② 오래전부터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 ③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 ④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노후생활 준비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 ⑤ 기타()

문8-6.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① 생활비 마련 | ② 건강 | ③ 의료비(병원, 약값 등) | ④ 자녀 뒷바라지 |
| ⑤ 이웃과의 갈등 | ⑥ 외로움 | ⑦ 주택마련 | ⑧ 기타() |

문8-7. 선생님은 몇 세 무렵부터 영농(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만 세

문8-8. 농업인도 정년(停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모르겠다
- ④ 필요하지 않다.

문8-9. 일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도 직장인과 비슷한 퇴직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 ②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③ 있어도 나쁠 것은 없으나 본인은 관심이 없다
- ④ 현재의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충분하다

문8-10. 선생님은 몇 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만 세

문8-11. 귀하의 부부가 노후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만원

문8-12. 귀하의 부부가 노후에 부족하지 않게 그런대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만원

문8-13. 귀하의 부부가 노후에 여유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풍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만원

문8-14. 귀하 부부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 ② 본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족하므로 자녀와 가족들이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
- ③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국가가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
- ④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노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⑤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⑥ 기타()

문8-15. 현재 노후준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래보기에서 모두 √표 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① 국민연금 가입	<input type="checkbox"/> ② 개인연금 가입	<input type="checkbox"/> ③ 농업소득 증대	<input type="checkbox"/> ④ 예금·적금
<input type="checkbox"/> ⑤ 부동산 투자	<input type="checkbox"/> ⑥ 주식투자	<input type="checkbox"/> ⑦ 자녀교육(의지)	<input type="checkbox"/> ⑧ 사채(대부)
<input type="checkbox"/> ⑨ 보험	<input type="checkbox"/> ⑩ 계(契)	<input type="checkbox"/> ⑪ 농지	<input type="checkbox"/> ⑫ 주택
<input type="checkbox"/> ⑬ 국가에 의존	<input type="checkbox"/> ⑭ 사회단체에 의존	<input type="checkbox"/> ⑮ 기타()	

문8-15-1. 위의 여러 가지 노후준비중에서 귀 닥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참고 문헌

- 강성호. 2004. “부양의식 변화 및 노후 준비수단의 변화추이 분석.” 『연금포럼』 13호. 국민연금연구원.
- 김미곤. 1997. “최저생계비 계층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등.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등. 2006. 『최저생계비 계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06-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등. 2007.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한 지역별 빈곤현황 및 요인.” 『2007사회보장학회 발표자료』. 사회보장학회.
- 김미혜 등. 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91-104.
- 김선주 등. 2006. “역모기지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민간 역모기지 이용자 특성 분석.” 『국토연구』 제50권. pp:125-146.
- 김성숙. 2005.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보완대책: 최저임금과 최저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연금포럼』 제17호(2005봄). pp.57-66.
- 김성숙 등. 2001.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 김성용, 이계임. 2002. 『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봉 등. 200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완 등. 2005.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원의 실태분석: 가구소비실태조사(2000)를 중심으로』. Working Paper 2005-01. 국민연금연구원
- 김시원 등. 2006. 『제1차(2005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조사보고서 2006-01. 국민연금연구원.
- 김용택 등. 2004.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하. 1997. “여성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보방안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용하. 2001.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 방안.” 『한국인구학』 24(1): 149-182.

- 김윤근 등. 1985. 「고령화추세에 따른 농업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윤식. 1994. “농어민 경영이양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섭 등. 2006.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김인숙. 1992. “농가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경기도 중년기 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 2001. “일본의 고령자 소득보장 관련 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 「주요 선진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통권 제20호. pp.177-230.
- 김정호 등. 2006.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C2007-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균. 2006.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단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제 15호.
- 김태성, 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청목.
- 남기철. 2006. “중년기 남성의 노후계획 실태 및 영양요인 탐색: 인구학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2006 가을호.
- 농림부. 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농림부. 2004.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등 조사」.
- 류건식, 신문식. 2005.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인식실태와 노후보장체계.” 『사회보장연구』 21(3): 1-21.
- 문형표, 유일호. 1994.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문형표 등. 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06-01. 한국개발연구원
- 박경숙.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
- 박대식. 2004.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등. 2006.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병현. 2003.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현학사.
- 박성재 등. 2006. 「농가단위 농업소득 안정에 관한 연구」. C2006-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순일 등. 2001. 『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의 빈곤층의 소득보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재원 등. 2004. “농촌지역노인의 생활실태와 노후에 대한 준비 및 인식도.” 『논문집』 제24집. pp.111-128. 대구보건대학.
- 박준기, 황의식, 문한필. 2005. 『저소득 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찬용 등. 2000.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호정, 황의식, 2007 “Optimal Participation in Farmer's Pension Program with Consideration of Agricultural Investment.” 미발표.
- 배준호, 김상호. 2005. 『연금, 이렇게 바꾸자: 노후 30년 부양비 50%에 지속가능한 자조형 연금체계』. 연구05-18. 한국경제연구원.
-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5. 『농촌노인의 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 석재은. 2000. “노인의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석재은, 김용하. 2002.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s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석재은, 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중욱, 이정호. 2004. “노후재정의 핵심과 3층 노후보장체계의 역할.”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여윤경. 2006. “역모기지의 노후소득효과.” 『소비자학연구』 17(1): 177-197.
- 오영수 등. 2006. “고령화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 『금융연구』 19권 별책. pp:129-207.
- 유경준, 심상달 편. 2004.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윤석명 등. 2003.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 이기성. 2005. “고령화와 노후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고찰.” 전북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산업경제학과 금융·보험 전공).
- 이명현. 2006. “농가의 경영주 고령화와 소득문제에 대한 고찰.” 『농정연구』 2006년 겨울호(통권 20호). pp:173-187.
- 이선행, 이연순. 2002.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노후 월평균생계비 산정: 최저생계

- 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의 산정.”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4호.
- 이영대, 정명채. 1988. “농가유형별 노후준비실태분석.” 『농촌경제』 41권. pp.67-78.
- 이용하. 2000. “농어촌지역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년도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 이은구 등. 2005. 『거주지역·경제능력 등에 따른 농촌노인의 유형화 및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 농림부.
- 이흥규. 2001. 『노령농 소득보장대책』. CEO Focus 92. 농협조사부.
- 이혜경. 1989. “농업구조개선과 사회복지정책 : 일본 농업자연연금제도의 딜레마.” 『사회보장연구』 제5권. 한국 사회보장학회.
- 임춘식 등. 2005.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 보건복지부·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경배. 1998.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 창업지원 방안』. 정책연구자료 99-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2002. “노부모부양 행위의 변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68:36-51.
- 정경희 등.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정책보고서 2005-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정경희 등. 2005.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정책보고서 2005-85. 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명채 등. 1987. 『농어민연금 및 사회보험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등. 1988. 『농어민연금제도의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등. 1992. 『은퇴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등. 1994.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영숙. 2005. “빈곤과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 노인, 모자, 장애인 가구에 대한 비교.” 『소비자학연구』 6(1): 31-68.
- 조추용. 2006. “일본의 연금개혁과 노후생활보장정책.” 『노인복지연구』 통권 32호 (2006 여름). pp.31-68.
- 조태식. 2005. “우리나라의 역모기지론 취급현황 및 활성화 방안.” 『주택금융월보』 2005년 10월호. pp.2-12.
- 조진희. 2004. “경로연금의 현황과 과제.” 『연금포럼』 vol. 13. pp:21-26.

- 최경환. 2007. “농업인 노후 대비 소득보장의 실태와 과제.” 『농업전망 2007(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기홍. 200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 정책보고서 2004-12. 국민연금연구원.
- 최병호 등. 1995. 『국민연금제도의 농어촌지역 적용현황과 정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재, 김태성. 2002. “고령화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한국사회과학』24(2): 1-41.
- 최은희. 2006.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역저당제도의 잠재수요 특성 분석.”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희경. 2004. 『노인의 빈곤요인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한국개발연구원. 2003. 『농가 경제·사회·복지실태조사 보고서: 소농가를 중심으로』.
- 한정자. 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황의식, 문한필. 2003.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분석』. 연구보고4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Feldstein, M. and J. Liebman. 2000. “Social Security.” in A. Auerbach and M.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ume 4 Ch. 32. North-Holland.
- Padro, Fernando F. 2004. *Statistical Handbook on the Social Safety Net*. greenwood press: London.
- Rainwater, Lee, Martin rein, and Joseph Schwartz. 1986. *Income Packaging in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Income*. Clarendon Press.

연구보고 R547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1.

발 행 2007. 11.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전화 02-2263-7534 <http://www.khip.co.kr>

ISBN 978-89-6013-057-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